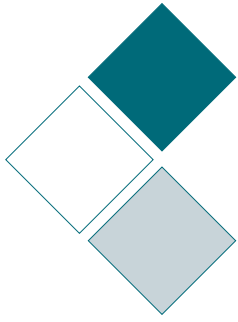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2018. 2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의
최종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8.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최종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박물관학박사)

공 동 연 구 김창규(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원장, 법학박사)
박윤옥(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박물관학박사)
황규진(前 월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부관장, 박물관경영석사)
이진형(경희대학교혜정박물관 학예사, 박사과정)

연 구 지 원 박자행(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문화경영정책석사)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추진 현황 5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수립	6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7
	2-1.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체계	7
	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예비타당성조사	8
	2-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변경	8
	2-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9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수립	9
	3-1.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9
	3-2. 기본계획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공간배치	9
	3-3. 기본계획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체계구상	12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준비조직의 신설 및 운영	15
	4-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신설	15
	4-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운영	15
제3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 법제화방안 19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유형 분석	20
	1-1.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기관	20
	1-2.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	23
	1-3.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28
	1-4.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34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	35
	2-1. 운영주체의 법인화 추세	35
	2-2.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	38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방안	39
	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방향	39
	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및 내용	42
	3-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안	52

제4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핵심적 내부규정 제정방안
61**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 제정의 기본방향	62
2. 유사기관의 내부규정 운영사례 분석	62
2-1. 국립중앙박물관	62
2-2. 국립민속박물관	65
2-3. 국립중앙과학관	68
2-4. 국립과천과학관	70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의 제정안	72
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 체계	72
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핵심적 내부규정안	75

제5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93**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장기 방향	94
1-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비전	94
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지향가치	94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운영	94
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무 및 조직구성	94
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 사무분장	95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98
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관리	98
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전시기획	103
3-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교육운영	105
3-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수익창출	108

제6장 결론

11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농업은 국민에게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며, 그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는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된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서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과 농촌문화가 쇠퇴하였고, 이를 지탱하던 농촌사회는 젊은이들의 유출로 인한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어 농업노동력의 양적 및 질적 붕괴가 가속화되었고, 세계화·국제화에 따른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경쟁시대의 전개는 글로벌 푸드가 밥상을 차지하는 비중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 정부는 1999년 2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켜 나가고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그 법적 근거로서 당시 「농업·농촌기본법」(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말한다)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정부의 국가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이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에 정착한 이래로 형성·발전·진화되어온 우리의 농업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를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하고 농업역사문화를 총체적으로 전시하여 국민들이 마음껏 체험·공유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적 임무이다.
- 또한 우리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본이념의 구체화를 위하여 농업의 경제적·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전파·공유시키고, 농식품 기반의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농업·식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농업·식품과 그 문화정체성을 기반으로 농업기술의 혁신발전과 농식품 세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발맞추어 국가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농업·농촌문화의 가치 제고를 통해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농촌문화의 전시·체험·교육을 통해 전 국민에게 농업 및 농촌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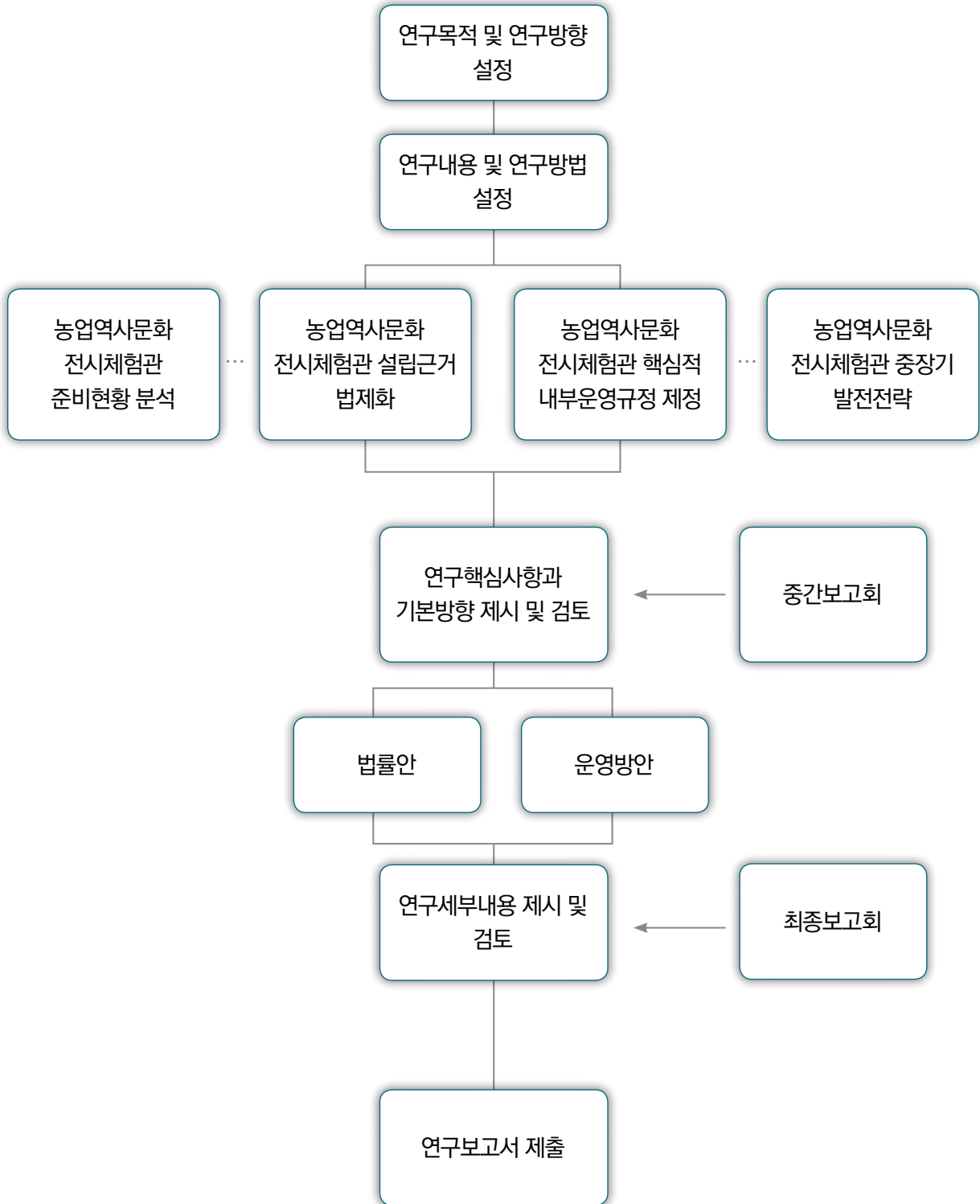
- 이러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준비작업은 2014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5년 12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2016년 12월 EGA GROUP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 2021년 상반기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사전준비작업으로서 무엇보다도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 설립근거의 법률안 마련, 핵심적인 내부 운영규정의 제정, 장기적인 운영전략 등의 구체화가 시급하다.
- 따라서 본 연구는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그 설립근거의 법제화 방향과 그 법률안의 제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적 내부 운영규정 및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장기 발전전략(방향)의 제시에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준비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접적인 설치근거규정이나 설치법률 없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동법 제45조의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다.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국가로부터 법적 재정지원을 받으며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직접적 설치근거가 법령에 마련되어야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그 설립근거의 법제화 방향과 그 법률안 제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적 내부 운영규정 및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장기 발전전략(방향)의 제시를 그 연구범위로 한다.

○ 또한 본 연구는 연구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수행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수행한다.

[그림] 연구수행체계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2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추진 현황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수립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수립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준비조직의 신설 및 운영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수립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계획은 2007년 기본방향설정연구를 통해 기획된 이래로 2008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의 신설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부터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¹⁾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예비타당성조사연구 및 전시기법연구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경기도 수원시와 MOU 체결 및 부지활용방안 협의(부지 102,000㎡ 무상제공)를 거쳤고, 수원시는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을 확정(농촌진흥청 이전부지 중 102,000㎡ 확보)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5월 제출하였다. 이 당시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²⁾

[표]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사업계획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농촌진흥청 본청 인근
사업규모	대지면적 50,000㎡, 연면적 18,000㎡
사업내용	전시영역 : 농업·첨단농업·어업·식품전시체험관, 어린이박물관 등 전시지원영역 : 홍보관, 교육공간, 농어업아카이브, 컨벤션홀 관리운영영역 : 연구공간, 사무공간, 유지관리공간
추진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1,773억원(국고 : 1,048억원 / 지자체(부지) : 725억원)
사업기간	2016~2019년(4년)

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41~44면;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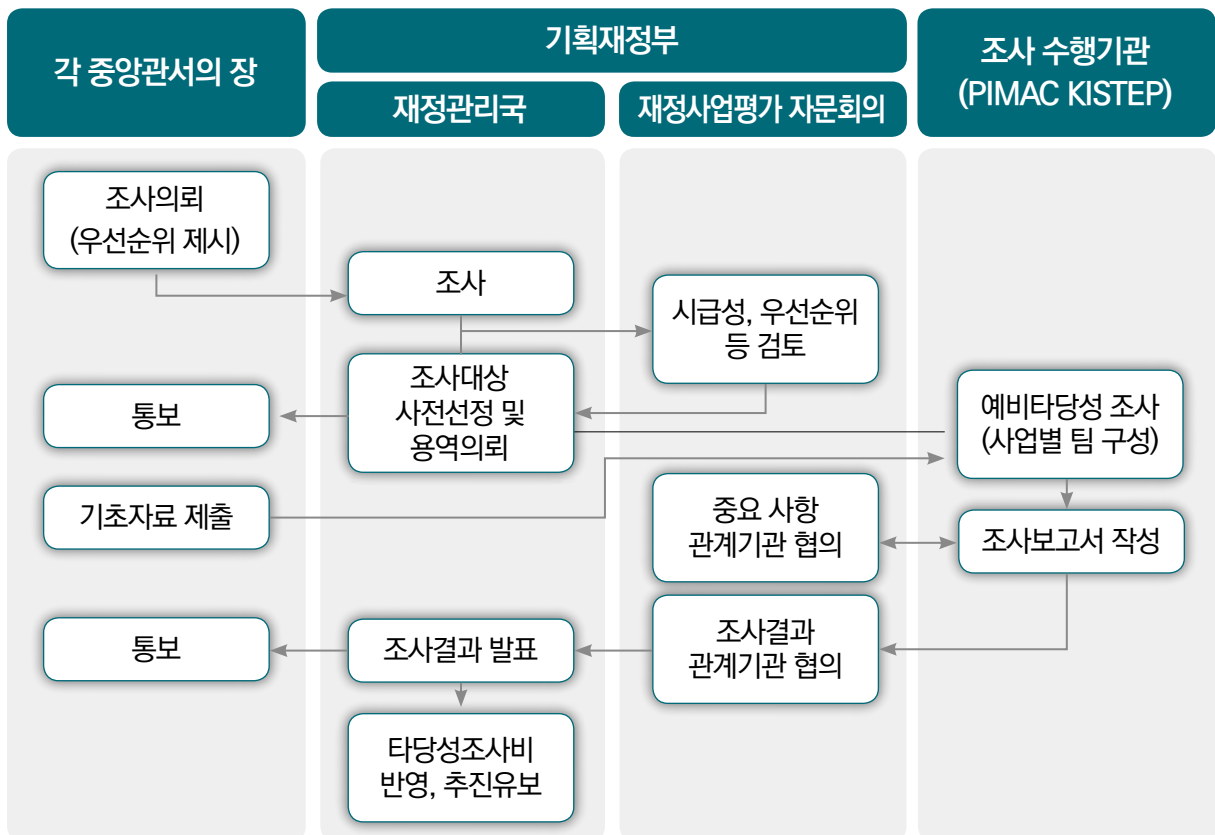
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46면.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2-1.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체계

- 우리나라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산업·정보화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총괄하여 수행하고, 해당 사업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28조, 제32조 내지 제39조).

[그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계³⁾



3) 김명규(2017.8.25.),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와 정책방향(<http://blog.naver.com/kpfisnet/221081961333>).

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예비타당성조사

2-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변경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은 2014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였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재정으로 국립농어업박물관을 건립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운영체제도 별도 법인으로 변경되었다.⁴⁾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대상사업 부지규모가 당초 102,000㎡(연면적 45,000㎡)에서 50,000㎡(연면적 18,000㎡)로 축소되었다.⁵⁾
 - 2015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원시의 MOU 체결부지 활용방안 협의에서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50,000㎡를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52,000㎡)는 수원시 활용 및 도시숲 조성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연계 개발하기로 협의되었다.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 변경내용

구분	최초 사업계획 (2014.5)	1차 변경 (2014.9)	2차 변경 (2015.4)	비고
사업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농촌진흥청 본청 인근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사업기간	2015 ~ 2018(4년)		2016 ~ 2019년(4년)	
대지면적	102,442㎡		50,000㎡	
연 면 적	45,000㎡ (2개동 신축, 3개동 리모델링)	26,035㎡ (2개동 신축, 2개동 리모델링)	18,000㎡ (2개동 신축, 1개동 리모델링)	
총사업비	3,532억원 (국고 2,176억원 + 부지비)	2,488억원 (국고 1,131억원 + 부지비)	1,773억원 (국고 1,048억원 + 부지비)	당초 부지비 1,357억원 최종변경 부지비 725억원 (수원시 무상제공)

4)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면.

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48면.

2-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은 2015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B/C 0.97, AHP 0.515의 결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종합평가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결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해당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⁶⁾고 결론지었다.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수립

3-1.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2015년 5월 EGA GROUP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16년 12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EGA GROUP의 연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사업타당성 분석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야외공간에서도 수행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전 건립계획에서 책정된 적정 운영인력 42명을 49명으로 증원하여 검토하고,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에서 운영주체의 조직형태를 재단법인으로 하며 조직체계를 3본부 1과 6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⁷⁾

3-2. 기본계획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공간배치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사업대상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시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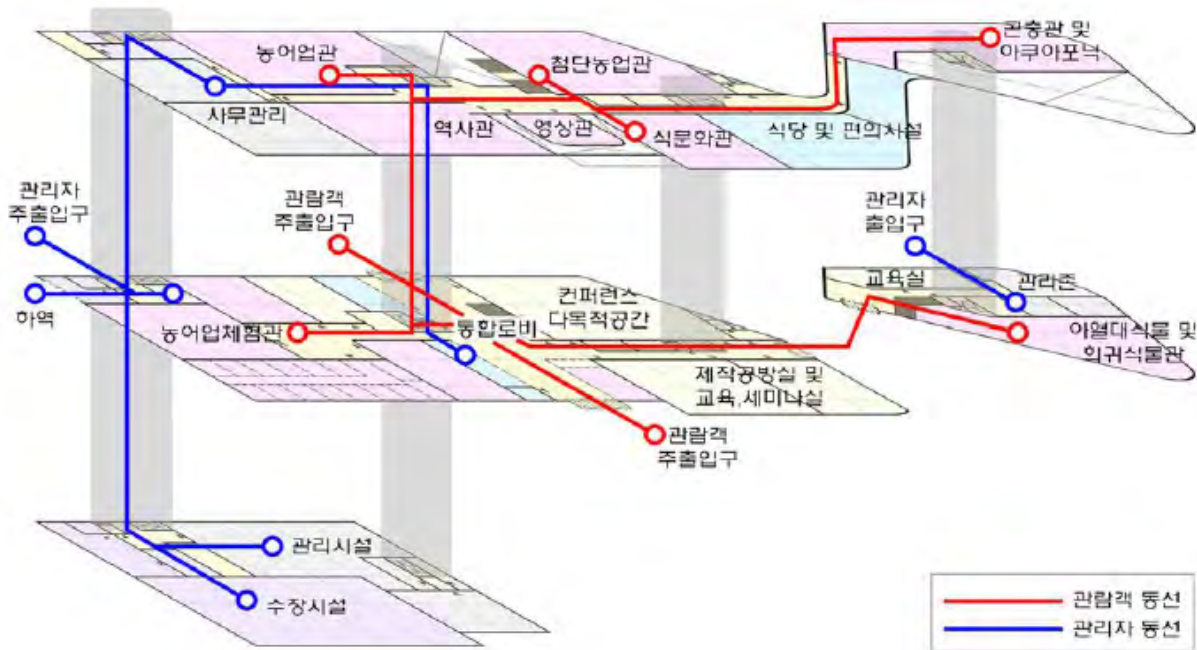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233면.

7) EGA GROUP(2016.12),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19~338면.

전면부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체험 및 행사가 가능하게 외부공간을 구성하며, 전시체험관과 외부공간의 연계 및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간을 배치하였다.⁸⁾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전시체험관은 역사관, 농어업관, 첨단농업관, 농식품 홍보관, 식문화관, 영상관, 농어업체험관으로 구성하였다.⁹⁾

[그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체험관의 공간배치 및 콘텐츠 구성



건물	주제	주요 내용
전시체험관	역사관	- 선사시대~조선시대 - 초기농경, 농경 도구의 발달, 농경문의 발달, 농어업정책과 기술의 발전, 농어구 발달과정 등 - 관람객과 소통을 통한 전시유물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농어업관	- 일제강점기~근현대 농어업 - 근·현대 농어업 및 농어업 기술의 발전상과 세계 농업의 현황
	첨단농업관	- 현대~미래 농업 - IT·BT 첨단기술과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는 농업의 변화모습 등 체험 - 농업의 미래가치, 농업과 바이오공학, 농업과 기술, 농업과 환경 등 ※ ICT연계 정밀농업, 바이오 장기 등 의료산업, 식물공장, 농업로봇 전시
	농식품 홍보관	- 귀농귀촌 등 농식품 관련 정책 홍보 제공 - 라운지 및 컨설팅 룸 운영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홍보

8) EGA GROUP(2016.12),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151~152면.

9) EGA GROUP(2016.12),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178~180면.

건물	주제	주요 내용	
전시체험관	식문화관	- 우리의 식문화, 미래식품, 기능성식품, 건강한 먹거리 등 주제전시 -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을 즐길 수 있는 쿠킹클래스 운영	
	영상관	- 약 104석 규모이 영상관 구성	
	농어업 체험관	전시체험	- 농사의 과정과 문화, 농식품 관련 직업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놀이·체험 공간 - 농부의 한해, 농경문화 영유아를 위한 리틀 빌리지 체험
		직업체험	- 미래세대가 농식품 관련 직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체험 ※ 곡물생산가공, 육류가공, 낙농, 화훼, 과수, 동물병원, 생명과학(인공장기) 등
	3D영상관	- 약 178석 규모의 3D영상관 구성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외부공간은 전통의 농촌마을 외부공간을 모티브로 동네마당, 체험마당, 커뮤니티 광장 등 공간별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온실, 상징마당, 동네마당, 놀이마당, 기억의 숲, 덩굴식물원, 어울림마당, 휴게마루, 축제마당으로 구성하였다.¹⁰⁾

[그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외부공간 배치도



10) EGA GROUP(2016.12),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140~147면.

3-3. 기본계획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체계구상

3-3-1.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운영주체의 유형별 운영형태를 국가의 재정투자 형식에 근거하여 공공직영, 공공위탁, 민간투자, 민영화방식으로 구분하고, 공공위탁방식으로 재단법인 설립,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하면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를 공공위탁방식 중 재단법인의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¹¹⁾

○ 그러나 국가나 민간이 설립하는 법인의 법적 형태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소속기관(부속기관), 책임운영기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으로 구분된다.

- 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부처를,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그 직제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 직제와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은 민법이나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거나 설립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그 특수법인의 성격에 대하여는 설립근거를 규정한 법률에서 동 법률이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 민법에 의한 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말하고, 상법에 의한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의 사단법인을 말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로서 제안하고 있는 ‘재단법인’ 유형은, 법인의 법적 형태로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고, 그 운영원리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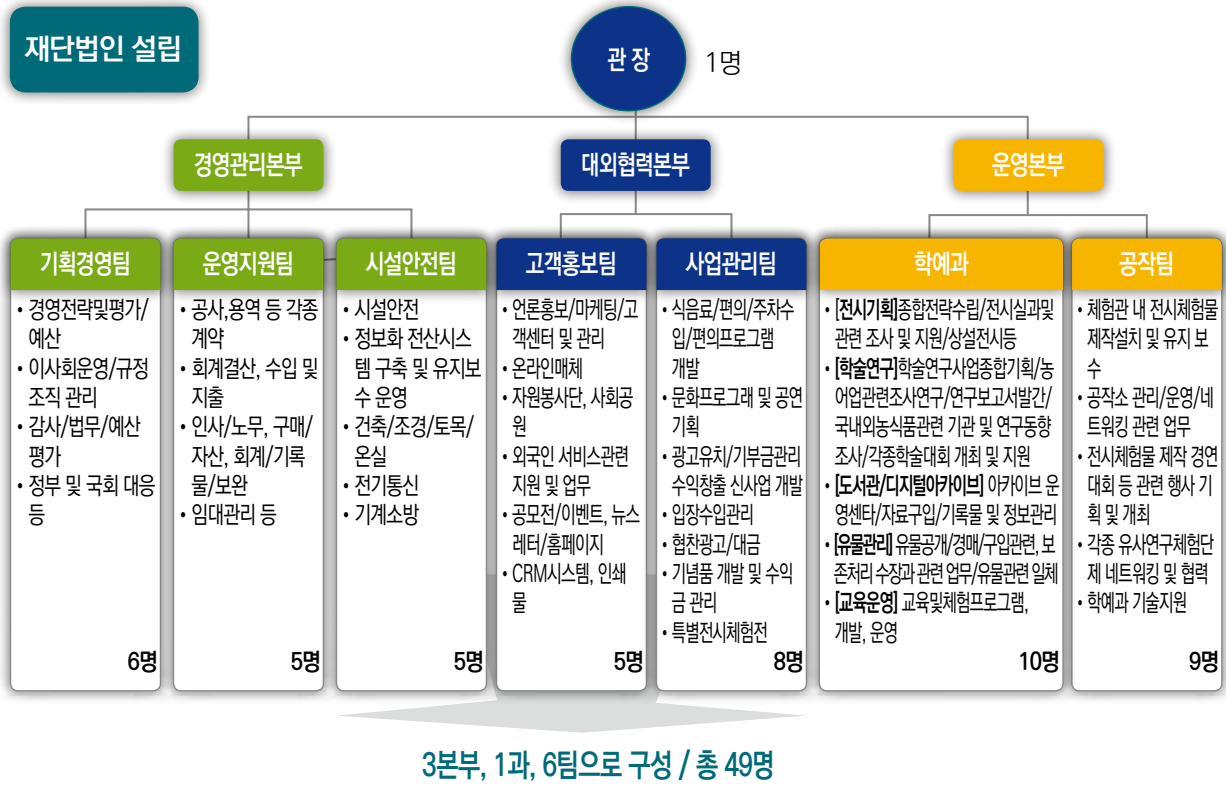
3-3-2. 운영주체의 조직체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운영주체의 조직체계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의

11) EGA GROUP(2016.12),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18~319면.

특성을 반영하여 3본부 1과 6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²⁾

[그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조직도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최근 전시체험관의 경향 등을 고려하여 학예연구 및 관람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정원을 49명으로 상정하고, 위탁용역 대상의 시설관리·청소·경비·주차·안내매표·전시운영 부문에 필요한 정원 외 임시직 인력을 60여명으로 제안하고 있다.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조직 업무분장도

구분	주요업무
관장	-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총괄
경영관리본부	- 경영전략 및 평가 / 예산 - 이사회운영 / 규정·조직관리 - 감사 / 법무 / 예산평가 - 정부 및 국회대응 등

12)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36~338면.

구분		주요업무	
경영 관리 본부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노무, 구매 / 자산, 회계 / 기록물 / 보완 - 공용차량 운영관리, 임대관리 등 - 공사, 용역 등 각종 계약 - 회계·결산, 수입 및 지출 - 직원복지 및 물품관리 	
	시설안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안전 - 정보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운영 - 건축 / 조경 / 토목 / 온실 - 전기·통신, 기계·소방 	
대외 협력 본부	고객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홍보 / 마케팅 / 고객센터 및 관리 - 온라인 매체 - 자원봉사단, 사회공헌 - 외국인 서비스 관련 지원 및 업무 - 공모전 / 이벤트, 뉴스레터 / 홈페이지 - CRM 시스템 관리, 인쇄물 	
	사업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음료 / 편의 / 주차 수입 / 편의 프로그램 개발 - 문화프로그램 및 공연기획 - 광고유치 / 기부금관리 / 수익창출, 신사업 개발 - 특별전시체험전 - 입장수입관리 - 협찬광고 관리 / 대관 - 기념품 개발 및 수익금 관리 	
운영 본부	학 예 과	전시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전략기획조정시행, 학예 예산편성 및 소관사업에 관한 사항 - 전시실관리 및 관련조사·개최지원 - 상설 전시, 리노베이션 등
		학술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사업 종합기획 - 농어업관련조사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 국내외 농식품관련 기관 및 연구동향 조사 -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지원
		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 운영전략 - 자료구입 - 기록물 및 정보관리
		유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공개 / 경매 / 구입 관련 업무 - 보존처리 및 수장고 관련 업무 - 유물관리 업무 일체
		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연구, 개발, 운영
	공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관 내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 공작소 관리 / 운영 / 네트워크 관련 업무 - 전시체험물 제작 경연대회 등 관련 행사 기획 및 개최 - 각종 유사연구체험단체 네트워킹 및 협력 - 학예과 기술지원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시설관리운영은 운영주체가 담당하되, 수익시설 또는 지속적인 전문가의 견해,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변경 및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위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 중 농어업체험관과 컨퍼런스(다목적 공간) 부분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변경 및 콘텐츠의 보완, 관람객의 요구와 반응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전문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므로 부분적 운영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¹³⁾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준비조직의 신설 및 운영

4-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신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2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 계획에 따른 설립준비작업을 직접 관장·수행하는 설립준비조직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을 신설하였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2017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농림축산식품부직제”라 한다) 개정을 통하여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산하 하부조직이다.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당시 2020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에 맞추어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출범하였다.

4-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운영

4-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정원 및 업무분장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림축산식품부직제에 따라 팀장 1명을 포함한 정원 2명(현원 1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동직제 제44조).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공사 관련 발주·자재 조달 및 건립 공사의 관리·감독

13)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83~384면.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체험·교육 콘텐츠 등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리·운영 기관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4-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사업추진

4-2-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법제화 및 운영방안 마련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통해 그 설립근거의 법제화 방향과 법률안 마련,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이후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내부 운영규정 및 체계적 운영방안의 마련을 수행하고 있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법제화 및 운영방안 마련을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추진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2020년 하반기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개관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건축실시설계 마련과정에서 건축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공사발주 및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2018년 1월 24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시기를 당초 2020년 하반기(7월)에서 2021년 상반기(5월)로 조정하였다.

4-2-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건축실시설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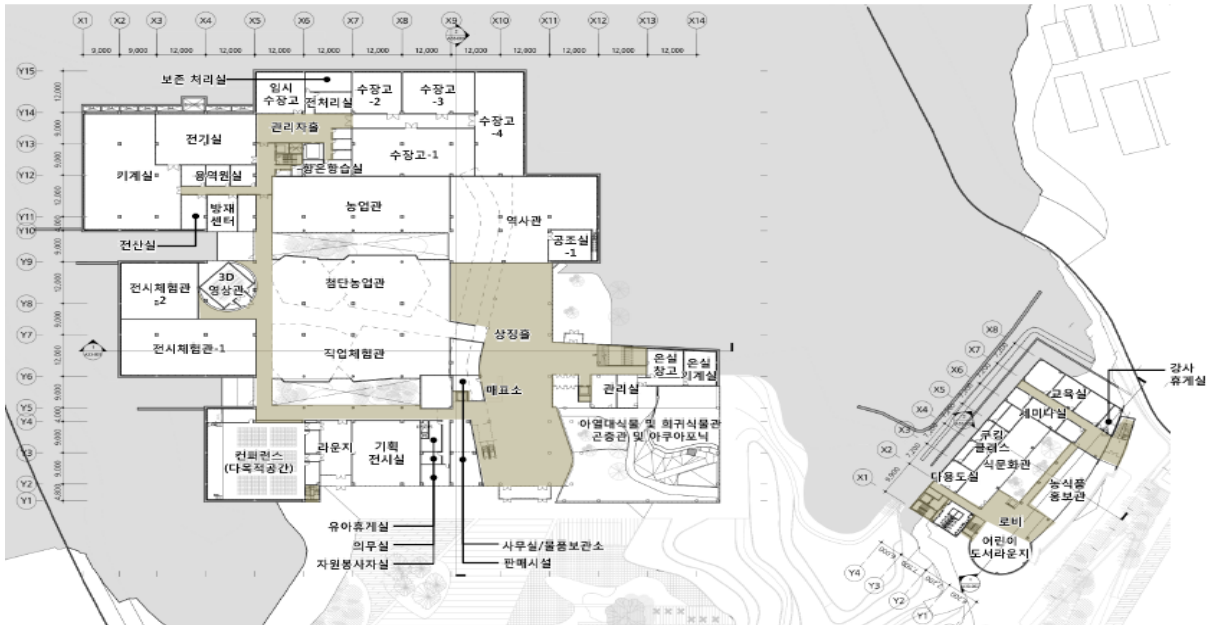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건축기본설계 및 건축실시설계와 함께 그 전시를 위한 전시기본계획 및 전시실시설계 등을 용역발주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기본설계 및 건축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건축계획 등에 수정이 가해지는 등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 첫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건축계획은 전시체험관의 건축계획을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설정하였으나, 건축실시설계용역의 건축계획은 별관을 추가하여 본관 지상 3층, 별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였다.¹⁴⁾

14) HAEAHN architecture(2017.11.1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계획설계 보고회 자료, 농림식품축산식품부, 4면 및 17~20면.

[그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축실시설계용역의 건축계획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둘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축실시설계용역의 건축계획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외부공간을 농업전시체험 프로그램의 특수성과 공원유지관리의 측면에서 유료와 무료 공간영역으로 상세히 구분·설정하고, 그 배치계획을 변경하였다.¹⁵⁾

15) HAEAHN architecture(2017.11.1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계획설계 보고회 자료, 농림식품축산식품부, 25면 및 27~30면.

[그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축실시시설계용역의 외부공간계획



건축 전시체험과 연계한 외부 전시체험 공간



외부 경작체험공간(다행이 논, 밭, 과수원)



진입공간(파머스 마켓 활용)



○ 셋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조직체계 및 공간배치계획에서 ‘공작팀’의 설치와 ‘제작공방실’을 배치하였으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건축실시시설계용역 건축계획의 공간배치계획에서 ‘제작공방실’을 삭제하고 조직체계에서 ‘공작팀’을 배제하기로 변경하였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3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 법제화방안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유형 분석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방안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유형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건립한 이후 이를 운영할 운영주체의 법적 형태로서의 조직유형을 살펴보면, 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 법률에 근거를 둔 특수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의 지정이나 위탁의 유형이 가능하다.¹⁶⁾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설립근거를 법제화할 때에 그 운영주체의 조직유형을 법적 형태 중심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그 법적 형태에 따라 설립근거의 형태나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1.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기관

1-1-1. 소속기관 조직유형의 개념 및 종류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를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업무 중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 및 교류 등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속기관으로 설립·운영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 또한 중앙부처의 부속기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은 해당 직제 또는 설치법의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부서) 또는 그 소속기관장 산하의 소속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소속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농림축산식품부직제 제2조제1항), 이들 소속기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직제에 그 설치근거(직무, 기관장, 하부조직)와 정원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장 소속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 국가가 설립한 국립박물관 총 40개 중 26개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6개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16) 본 연구는 국가가 건립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독립된 법인 형태의 운영주체 설립과 그 법제화 방안의 탐구 및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중앙부처)이 직접 하부조직(부서)을 통해 운영하는 국립박물관(경찰청의 국립경찰박물관, 외교통상부의 외교사전시실, 과학기술통신부 우체국의 우정총국(체신기념관) 및 우정박물관, 국세청의 조세박물관) 등의 유형은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표]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 (26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서울	1종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미등록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문화재청	직제	소속기관
서울	2종	관세박물관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서울	1종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국악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서울	1종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육군박물관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설치법	소속기관 하부조직
경기	1종	세종대왕유적 관리소	문화재청	문화재청	직제	소속기관
강원	1종	국립춘천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강원	미등록	강원경찰박물관	경찰청	강원경찰청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광주	1종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대구	1종	국립대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북	1종	국립청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북	1종	공군박물관	국방부	공군사관학교	사관학교설치법	소속기관 하부조직
충남	1종	국립공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남	1종	국립부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남	2종	칠백의총관리소 (기념관)	문화재청	문화재청	직제	소속기관

국립박물관 (26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충남	1종	충무공이순신 기념관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전북	1종	국립전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전북	1종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전남	1종	국립나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경북	1종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경남	1종	국립김해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경남	1종	국립진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제주	1종	국립제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1-1-2. 소속기관 조직유형의 특성 및 장단점

-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기관(부속기관)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관료제적 특성을 가지며 계층적 통제·분업 및 전문화·공식화 등 전통적인 조직이론에 근거한 전형적인 기계적 조직으로서, 정부조직법과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직구성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직원의 인사권은 소관 부처장이 보유하고, 정원의 관리나 하부조직의 설치는 직제 또는 해당 설치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또한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기관 조직유형은 기관의 업무가 정책 연계성이 높아 중앙부처의 일상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보안·공안·위기관리 등 높은 수준의 공권력적 업무가 요구되고,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이 혼재 또는 성과의 가시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성 추구가 중요하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에 적합한 조직형태이다. 이와 같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설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표] 중앙부처 소속기관 조직유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공공성과 책임성,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고 안정적인 기관의 운영이 가능 - 국가주도의 업무집행 및 대국민서비스기능의 강화를 통한 공공성 제고 - 농업역사문화의 유물수집, 보존, 조사연구, 전시체험 등 본연의 업무를 정부가 일임하여 농업역사문화 보존 및 확산정책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 - 문화사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저조한 수익구조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비효율성, 낮은 생산성, 비탄력성으로 인하여 조직의 선진화 구축에 저해 - 국가의 행정조직 감량이라는 국가정책방향에 비추어 조직구성원인 공무원의 정원 확보 및 조직설립의 어려움이 예상 - 경직적인 행정조직문화 속에서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민간역량의 발휘가 제한

1-2.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

1-2-1.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직유형의 개념 및 종류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를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업무 중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 및 교류 등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기타 유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고 있다(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제3항).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립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주체는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다.
-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책임운영기관 1개(특허청) 및 소속책임운영기관 49개의 총 50개 기관이 설치·운영 중이고, 이 가운데 35개 기관이 일반회계로, 13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2개 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 현황¹⁷⁾

사무성격에 따른 구분	지위에 따른 구분		정원 (총정원의 한도)	예산회계	비고 (소속기관의 유무)	
	소속책임 운영기관	중앙책임 운영기관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국립종자원		201명	일반회계	○
		국토지리정보원		113명	일반회계	
		항공교통본부		305명	일반회계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54명	일반회계	
		경인지방통계청		337명	일반회계	○
		동북지방통계청		294명	일반회계	○
		호남지방통계청		338명	일반회계	○
		동남지방통계청		224명	일반회계	○
		충청지방통계청		237명	일반회계	○
		항공기상청		115명	일반회계	○
	연구형 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78명	일반회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18명	일반회계	○
		국립생물자원관		112명	환경개선 특별회계	
		국립수산과학원		553명	일반회계	○
		통계개발원		48명	일반회계	
		국립문화재연구소		190명	일반회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72명	일반회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26명	일반회계	○
		국립축산과학원		319명	일반회계	○
		국립산림과학원		246명	일반회계	○
		국립수목원		63명	일반회계	
		국립기상과학원		109명	일반회계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국립국제교육원		72명	일반회계		
	통일교육원		66명	일반회계		
	한국농수산대학		101명	일반회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4명	일반회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51명	일반회계		

17)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4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사무성격에 따른 구분	지위에 따른 구분		정원 (총정원의 한도)	예산회계	비고 (소속기관의 유무)
	소속책임 운영기관	중앙책임 운영기관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국립중앙과학관		78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77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국방홍보원		158명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94명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98명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113명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2명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		316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국립나주병원		179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부곡병원		176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국립춘천병원		115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공주병원		125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마산병원		99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목포병원		73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재활원		318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경찰병원		600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해양경찰정비창		215명	일반회계	
	국방전산정보원		41명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90명	일반회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94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기타 유형 책임운영기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52명	일반회계	
	국세상담센터		140명	일반회계	
		특허청	직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또한 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은 해당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이나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하부조직(부서)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이 있는데(농림축산식품부직제 제2조제2항), 이들 소속책임운영기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직제에 그 설치근거(직무)와 종류별·계급별 정원 관리규정을 두고 그 하부조직 및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종자원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지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 국가가 설립한 국립박물관 총 40개 중 5개가 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4개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 (5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서울	1종	국립극장 공연 예술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경기	1종	지도박물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경기	1종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산림청	국립수목원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전남	미등록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경남	미등록	남부산림과학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1-2-2.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직유형의 특성 및 장단점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공식적이고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한 계층적인 조직관리를 강조하는

종전의 기계적 조직과 달리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한 통제를 대폭 줄이고, 일선관리자에게 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공공조직의 관료제적 성격을 탈피하도록 하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999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¹⁸⁾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원리는 기관장을 대내외 공모를 통해 임기직으로 임용하고, 관할부처 기관장과 해당 기관장간 사업 및 성과목표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해당 기관운영 성과에 대하여 관할부처 기관장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이다.

- 또한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직유형은 중앙부처와 책임한계가 명확한 집행적 성격의 업무, 공공서비스 생산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성과평가가 가능한 업무, 서비스이용자 부담원칙으로 상당한 정도의 안정적인 자체 재정 수입원이 있는 업무, 업무 성격상 영리성 또는 시장성이 거의 없어 민간업체를 유치하기 어려워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는 업무에 적합한 조직형태이다.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행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표】 중앙부처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직유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기관장 및 구성원에게 성과 향상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 기관에 대한 발전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 - 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자발적인 사업경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가능 - 기관의 업무수행 상 세부과정에 대한 상위기관의 통제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탄력성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 - 정부통제의 간단성과 명료성 및 기관목표의 명확화와 성과평가가 수월 - 정부조직의 규모와 인원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이 비구체적일 경우 책임소재의 불투명이 존재 -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각종 통제를 피하기 어렵고 평가의 부담에 따른 자율적 운영의 한계가 존재 - 업무의 독자성과 지속성 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할 우려가 존재 - 정책결정권자와 집행자간의 환류장치 미흡에 따라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저하의 우려가 존재 - 전문가의 영입이나 보충이 어려울 경우 마케팅, 경영 등 업무전반을 공무원이 관리함에 따른 전문성 약화의 우려가 존재 - 책임운영기관-주무부처-행정안전부의 3단계 평가에 따른 주무부처와의 정책연계성 저하의 우려가 존재

18) 김창규 외(2012.12), 문화유산기록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촉진방안연구, 문화재청, 181~182면.

1-3.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1-3-1. 특수법인 조직유형의 개념 및 종류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민법이나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그 설립근거를 두거나 설립특별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업무 중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 및 교류 등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 민법이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일반법인이라 하고, 국가가 특정한 정책이나 공공이익의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이나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그 설립근거를 두거나 설립특별법을 제정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한다.
 - 특수법인은 국가기관과 독립된 법인체로서 자율적인 경영이 보장되지만, 국가의 정책 및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거나 설립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의 감독권한을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¹⁹⁾
- 국가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출연·출자하여 영리추구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율적 운영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보장하나, 그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가지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독립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현황²⁰⁾

구분 (332)	관할부처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19) 양건열 외(2013.12),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0면.

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1.25.),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구분 (332)	관할부처	기관명
준시장형 공기업 (21)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구분 (332)	관할부처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청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0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기타 공공기관 (208)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미래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구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구분 (332)	관할부처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08)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주)강원랜드,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구분 (332)	관할부처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08)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현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성격이 유사한 체험전시관이나 과학관·박물관으로서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박물관재단, 태권도원 태권도박물관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여성사전시관을 운영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국립해양박물관 등은 기타 공공기관의 형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 또한 국가가 설립한 국립박물관 총 40개 중 3개(국립여성사전시관, 태권도원 태권도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해양박물관은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건립된 이후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중앙부처의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 (3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경기	2종	국립여성사전시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	특수법인
전북	1종	태권도원 태권도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법인
부산	1종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법	특수법인 (민간투자법인)

1-3-2. 특수법인 조직유형의 특성 및 장단점

- 중앙부처가 설립하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조직유형은 국가의 공공적 및 공익적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으로 법률의 특별규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정관이나 임원의 조직과 목적사업이나 재원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고,

국가는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금 모집, 관람료 징수 등 법령의 특전을 부여하여 운영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조직유형은 일정한 재원·시설·인력 확보로 독립적 조직운영이 가능한 사업,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가 서비스 공급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 민간의 전문성 및 기업 경영방식의 도입이 가능한 사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또한 중앙부처가 설립하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로서 공공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민간부문의 창의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조직의 인사·예산 등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업무영역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이다.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행정기관)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²¹⁾

[표] 중앙부처가 설립하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조직유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체로서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관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기능과 변화대처능력의 제고가 가능 - 경영효율화를 통해 신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인사, 예산·회계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 -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체험전시·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에 유리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콘텐츠 개발 및 체험전시·조사·연구 등의 수행이 가능 -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도입으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운영수익구조의 개선이 가능 - 법규 등에 얽매이지 않고 고객수요에 따른 탄력적 업무추진이 가능하며, 수요자 맞춤형 대국민서비스의 개발이 유리 - 법률의 규정을 통한 업무의 공공성 및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창출 위주의 운영에 따른 해당 기관의 본래 목적과 기능 상실의 우려가 존재 - 서비스의 질적 개선보다는 수익성 지표인 재정자립도의 지나친 강조로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존재 - 수익성과 단기효과에 집중하여 장기효과를 갖는 사업의 축소 및 약화의 위험이 존재 - 시장경쟁원칙에 따른 서비스 유료화의 추진으로 대국민서비스 비용부담의 증가 및 서비스의 질 저하의 우려가 존재

21) 김창규 외(2012.12), 문화유산기록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촉진방안연구, 문화재청, 185면.

1-4.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1-4-1.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설립법인의 성격 및 형태

- 민법에 의한 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 상법에 의한 법인은 상행위를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의 사단법인이 있다.
- 상법에 의한 법인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수익 창출을 기관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으로 하며 사원(주주)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이라는 점(상법 제169조, 민법 제39조)에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이라는 국가의 정책 및 공공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주체로서의 조직형태로 부적절하다.
- 민법에 의한 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는 점(민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이라는 국가의 정책 및 공공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주체로서의 조직형태로 가능하나 국가가 직접 설립할 수는 없다.

1-4-2. 행정기관(중앙부처)의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지정 또는 민간위탁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이후에 그 운영주체의 조직형태로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제3자인 민간인이 민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어 등기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 중인 기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에 일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제3자의 전문기관이나 유사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 중에서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을 위탁하거나, 관계 법률에 지정기관의 지정조건이나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을 지정하여 독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 현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성격이 유사한 체험전시관이나 과학관·박물관으로서 관계 법률에 독점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기관의 지정요건이나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운영되는 사례는 없고, 위탁계약에 따른 민간이나 공공위탁의 사례가 국립박물관의 경우에는 많으나 국가가 설립한 박물관의 경우는 총 40개 중 1개(국립등대박물관)가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공공기관의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1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경북	1종	국립등대박물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기술협회	위탁계약	위탁법인

○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하고 있는 농업역사문화체험전시관의 설립근거 제정을 위한 입법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국가가 직접 법제화하여 추진할 수 없는, 제3자인 개인의 자율의사에 따라 설립되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조직형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

2-1. 운영주체의 법인화 추세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을 체험전시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련 유물을 수집·보존·관리, 이를 위한 연구·조사·교육을 집행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서 국가와의 정책연계성이 높은 사업이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유물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체험 등 국가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과학관들은 종래 국가의 소속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설립·운영되었다.

[표] 국립박물관의 조직형태 분석결과

국립박물관(40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서울	1종	국립경찰박물관	경찰청	경찰청	직제	하부조직
서울	미등록	외교사전시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직제	하부조직

국립박물관(40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서울	미등록	우정총국/휴관 (체신기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직제	하부조직
충남	미등록	우정박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직제	하부조직
세종	1종	조세박물관	국세청	국세청	직제	하부조직
서울	1종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미등록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문화재청	직제	소속기관
서울	2종	관세박물관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서울	1종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국악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서울	1종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육군박물관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설치법	소속기관 하부조직
경기	1종	세종대왕유적 관리소	문화재청	문화재청	직제	소속기관
강원	1종	국립춘천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강원	미등록	강원경찰박물관	경찰청	강원경찰청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광주	1종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대구	1종	국립대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북	1종	국립청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북	1종	공군박물관	국방부	공군사관학교	사관학교설치법	소속기관 하부조직

국립박물관(40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충남	1종	국립공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남	1종	국립부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남	2종	칠백의총관리소 (기념관)	문화재청	문화재청	직제	소속기관
충남	1종	충무공이순신 기념관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전북	1종	국립전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전북	1종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전남	1종	국립나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경북	1종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경남	1종	국립김해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경남	1종	국립진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제주	1종	국립제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국립극장 공연 예술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경기	1종	지도박물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경기	1종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산림청	국립수목원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전남	미등록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경남	미등록	남부산림과학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국립박물관(40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경기	2종	국립여성사전시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	특수법인
전북	1종	태권도원 태권도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진흥및 태권도공원조성등에 관한법률 제20조	특수법인
부산	1종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법	특수법인 (민간투자법인)
경북	1종	국립등대박물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기술협회	위탁계약	위탁법인

○ 그러나 최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유사한 박물관이나 과학관의 성격이 세계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관람객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국내 문화기관의 경영체제 변동이 요구되고 있다.²²⁾

2-2.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

○ 국가가 어떤 공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직접 수행할 것인지, 각종의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그 특수법인에게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맡길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은 입법적 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²³⁾

○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로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일반 박물관·전시관·체험관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시설로 이루어지고 운영인력은 기존 박물관의 운영조직과 체험중심의 운영조직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며 전시체험관 및 외부공간도 유물의 전시보다는 전시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시설 및 운영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 및 시설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민간의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형태가 보다 적절하다.

22)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1), 방문객 친화형 생활사박물관 건립타당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34~137면.

23) 한국법제연구원(2010.10),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6~27면.

- 또한 행정의 복잡다기화에 따라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업무를 국가의 행정조직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가기능의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의 추구는 세계적 추세이고,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증원과 새로운 행정조직의 증설을 자제하는 오늘날의 국가정책에 비추어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신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재정으로 건립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으로 방향이 변경되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그 시설 및 운영 측면에서 지속적인 체험전시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전시시설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영능력,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 및 탄력적 운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신분 하에 경직된 조직체계 보다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함께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의 수집·보존·조사·연구 및 체험전시시설의 관리와 지속적인 전시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운영주체를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이라 판단한다.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방안

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방향

3-1-1. 조직유형별 설립근거의 형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유형에 따라 그 설립근거의 입법형식이 다르다. 이것은 국가가 국가정책 및 공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직접 공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그 특수법인에게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그 근거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국가의 하부조직(부서)이나 소속기관 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조직을 설립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정주의에 따라 「정부조직법」의 하위법령인 직제에 그 설립근거 및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여야 한다.

- 국가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형태로 조직을 설립할 때에는 해당 국가정책 및 공공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특별법에 그 설립근거 및 임원·재정·회계 등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은 사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형태와 재산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업역사문화체험전시관과 같은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의 조직을 국가가 설립할 때에는 거의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설립자의 정관 작성 후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의 절차 및 종전 재산의 출연을 전제로 국가설립의 특성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
 -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은 국가가 본래 자신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공업무를 특수법인에게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위상과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설립근거 규정이나 특별법에 규정하게 된다.

3-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형식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재정으로 건립하여 설립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그 설립근거를 법제화하는 입법형식은, 해당 법인의 공공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설치근거를 신설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치근거를 두는 두 가지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공공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과정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검토과정에서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던 농업식품기본법 제45조에 바탕을 두고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를 규정하여 농업식품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치근거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농업식품기본법이 아니라 독립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식이다.
- 국가가 자신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공책무를 법인에게 담당할 목적으로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국가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치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하는 방식은 그 공공책무의 집행과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법률체계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국회 및 정부의

입법과정이 개정절차로 간편하여 이해관계자 등에 따른 입법상의 저항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정관의 규정 내용에 따라서는 국가의 강한 지도·감독권 행사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이에 대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해당 법인의 설립·운영·지원·육성에 관한 기본사항 및 공통 적용되는 국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특수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립해양박물관법」과 같이 임대형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등 다른 기관과 달리 국가의 독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설치근거를 독립된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기도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치근거를 독립된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식은 해당 법인의 특성에 맞는 국가의 지도·감독과 지원조치를 차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회 및 정부의 입법과정이 제정절차로 복잡하여 이해관계자 등에 따른 입법제정과정상의 저항이 강하고 제정법률 전체의 체계구성에 따른 관계 법률의 중복규정을 신설해야하는 등 입법기술상의 비효율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 입법방식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을 통한 설립근거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책무 집행과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법률체계의 통일성 확보 - 국회 및 정부의 입법과정이 간편하여 이해관계자 등에 따른 입법상의 저항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의 내용에 따라 국가의 강한 지도·감독권 행사의 한계
독립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설립근거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특성에 맞는 국가의 지도·감독과 지원조치의 차별적 규정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및 정부의 입법과정이 복잡하여 이해관계자 등에 따른 입법제정과정상의 강한 저항 - 제정법률 전체 체계구성에 따른 관계 법률의 중복규정 신설 등과 같은 입법기술상의 비효율성 존재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농업·농촌·식품사업 정책을 체험전시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련 유물을 수집·보존·관리하며, 이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사한 기관의 설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가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독점사업을 전담하여 대행 업무로

하지도 않으며, 그 사업성격에 비추어 재단법인 운영형태의 일반 특수법인과 달리 국가의 특별한 지도·감독의 차별적 행사가 요구되는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및 정부와의 입법과정에서 법률제정상의 절차적 복잡성과 어려움 및 이해관계자 등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별도의 특별법의 제정방식 보다는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과 법률체계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회 및 정부와의 입법과정에서 저항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하는 방식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를 신설할 때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자율성 운영의 보장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특별한 규제가 공통 적용되는 특수법인 과학관 등의 정관 내용 중 공공성 보장내용을 해당 법인의 정관에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및 내용

3-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일반적인 재단법인 형태의 특수법인은 대부분 그 근거규정에 설립기관, 목적사업, 법인격, 정관 제정, 임원 및 직원, 경비 등의 지원, 수익사업의 주무부처 승인, 출연 및 기부, 민법의 재단법인 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부칙규정에서 시행일, 경과조치(설립준비위원회, 기관장의 임명, 추진팀 또는 준비위원회직원의 전환채용, 직원채용, 재산의 승계·귀속 등)의 법인설립준비를 종료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 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격이 부여되게 되므로, 준비과정에서 정관을 포함한 직제, 인사, 이사회운영 등 중요한 규정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 등을 업무로 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과정은 현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이 담당하고 있으나, 법률 제정·개정과 달리 정관의 작성업무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고 정관의 하위 내부규정은 설립위원회가 제정하거나 새로이 구성된 이사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과정에 참여하는 추진팀 직원 등의 소속 전환이나

특별채용, 기존 출연자산이나 예산 등의 처리를 위한 재산의 승계·귀속, 설립등기를 위한 최초 대표이사(이사장 또는 기관장) 및 이사 선임 등의 처리를 위한 경과조치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이사장 등의 임원구성이나 법인의 조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므로 이들 내용을 규정하는 정관의 작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설립)

구분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의 설립근거 입법체계 사례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여성사박물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설립	설립목적	설립목적	설립목적	설립목적	설립목적	○
	법인격		법인격	법인격	법인격	○
	설립등기					
	목적사업	목적사업	목적사업	목적사업	목적사업	○
	임원·직원		임원·직원	임원·직원	임원·직원	○
	국가출연			국고지원	예산지원	○
	재단준용		재단준용	재단준용	재단준용	○
		조직위임				
		국립중앙박물관 규정 준용				
			수익사업			○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		○
				공공기관운영법 준용		
				유사명칭사용 금지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경과조치)

경과조치 규정사항			
경과 조치	시행일		
			○
설립준비	설립위원회 설치	○	
	설립위원 구성 및 임명(5~10명)	○	
	최초 임원의 임명	○	
	정관 작성 및 인가	○	
	설립등기 및 사무인계	○	
	설립위원회 해산	○	
	설립비용	설립비용 부담	○
	사업계획 등의 승인	최초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관련업무의 승계	소관부처 업무승계	○
		소관부처 예산 및 행위 승계	○
종전 협회 등의 재산승계	종전 협회 등의 재산과 권리의무 승계		
	포괄승계재산가액 등기일 전일 장부가액		
소속직원 등의 경과조치	종전 직원의 승계 등	○	
채권발행 특례	채권발행의 자기자본		

3-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주요내용

3-2-2-1. 설립근거법 및 설립목적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은 2007년 기본방향설정연구를 통해 기획된 이래로 그 설립을 위하여 2008년 현행 농업식품기본법 제45조에 간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국가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2008년 농업식품기본법 제45조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는 그 국가책무의 바탕을 이루는 농업식품기본법 제45조 이하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하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및 전시체험·교육·교류 등을 통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추구함에 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목적은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하여 농경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에 두고 있는 것이다.

3-2-2-2. 법인격 및 목적사업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이다. 따라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31조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에 당해 법인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될지라도 그 법인이 주체로서 활동을 하려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 설립등기와 관련해서는 설립특별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한, 설립근거법의 부칙 규정에서 설립위원회가 정관 작성 후 주무장관의 인가와 설립등기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이 법인의 성립시기인 설립등기를 규정하기도 한다.
 - 따라서 이것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법인성립시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이다.
 - 이와 관련하여 설립등기사항까지 규정이 가능하나, 설립특별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한, 그 사례가 없다. 다만, 설립특별법으로 제정되거나 설립근거법의 규정으로 설치되는 경우 모두 조직의 특성상 사원총회를 요하지 않고 재산출연으로 설립되는 때에는 동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하여 농경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그 설립근거법에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은 일반 유물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교육·홍보에 머무는 박물관과 달리 과학관·전시관·체험관 등의 체험전시를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박물관의 사업과 함께 전시체험을 중시하는 과학관 등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과 유사한 국립박물관 및 국립과학관의 주요사업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표] 국립박물관 및 국립과학관의 주요사업 비교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직제)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법)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소관업무) 과학관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2. 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4. 과학기술자료의 수집·발굴·조사·연구·보존·제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의 보급 관련 특별전시회 관한 사항	○
	3. 박물관자료의 조사·연구		○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6.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8.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에 대한 지원·자문과 국내 및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 증진	○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직제)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법)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
	10. 그 밖에 해양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업무	○
		1. 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상설전시관·특별전시관·천체투영관·스페이스월드·천체관측소·어울림홀·캠프장숙소·실험실·강의실 등 운영	○
		3.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	○
		6. 과학기술 전시·연구·교육에 관한 정보화	○
		7.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전시·확산·홍보	
		11. 기타 과학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이 가운데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하여 농경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는 농업문화역사전시체험관의 사업으로는 유사 국립박물관의 사업 모두와 체험전시실 및 야외공간 관리 등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사업, 그리고 이들에 부수하는 수익사업 등이 포함되게 된다.

3-2-2-3. 정관(기본규칙)과 임원 및 직원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을 위하여 그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자가 기명·날인하는 정관에 관한 사항과 그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가. 설립근거의 규정내용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에 해당 법인의 정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임원 및 직원의 구성·운영을 정관에 따르도록 해당 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 또는 이들 내용 중 최소한 임원의 구성·임기·임명권 등을 설치근거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 설립근거법에 그 설립근거를 신설하는 때에는 임원·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설립특별법을 제정하는 때에는 임원이나 이사회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설립특별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이 가운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위원회가 그 임원·직원의 구성 및 이사회 운영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한 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는 절차를 거치고, 법인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임원구성·운영의 변경요구 등에 따른 개정절차를 고려할 때에 임원이나 직원의 구성·운영을 정관에 따르도록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다.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과 유사한 체험전시관으로서 일반적인 재단의 운영형태와 달리 기관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관장인 관장의 임기 보장과 함께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정관 규정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임원 중 기관장인 관장의 임기와 그 임명권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 경우 기관장(관장)과 이사장은 겸임하도록 하고, 기관장의 임명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며,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체계를 고려할 때에 관장을 포함한 이사 7명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나. 정관의 규정내용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위원회가 작성하는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필수적 기재사항)은 민법 제43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다.

- 또한 정관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데, 특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해당 법률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정관 기재내용 비교표

민법 (재단법인)	공공기관운영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과학관법 (국립과학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위원회가 작성하는 해당 법인의 정관은 농업식품기본법의 설치근거에 규정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 및 운영체계, 국가의 지원조치 및 지도·감독내용을 반영하고, 그 기본체계는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민법의 재단법인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과학관법의 정관 규정체계를 바탕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이사회운영의 규정내용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업식품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두는 특수법인으로서 그 성격상 설립자의 재산출연에 의한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기구가 필요하다.

- 이사회 구성·회의·의결·운영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규정하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의 하위 내부규정으로 이사회운영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관 보다는 하위 내부규정에 규정하는 것은 정관규정 전체 내용과의 균형성 및 그 신속한 개정이나 업무수행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하위 내부규정화에 따른 이사회 운영의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위원회가 작성하는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가능한 모두 규정하고, 이사회 운영경험을 통해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 그 내용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최초로 구성·운영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이사회의 운영은 가능한 그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상세히 규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3-2-2-4. 국가의 지원조치 및 감독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국가정책 중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및 전시체험·교육·교류 등을 통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출연이나 보조 및 기부 등과 같은 일정한 재원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 또한 국가정책의 구체화로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주무부처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다른 특수법인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유관기관의 관계 유물이나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을 허용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농업역사문화의 대국민 확산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허용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국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주무부처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결산서의 제출을 받는 등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2-5. 부칙 및 경과조치

-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그 부칙에 본칙의 규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법률의 시행일,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관계법령의 개정폐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먼저 그 개정 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과 함께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성, 주무부처의 인가, 설립등기, 최초 임원의 선임, 사무인계 등의 업무를 법인설립자 대행으로 수행하는 설립위원회의 설치·활동·해산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현실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서 법률에 의한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공포 후 즉시, 1월이나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전준비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공포 이후 특별히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설립에 따른 복잡한 법률관계의 변동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립준비와 관련하여서는 설립위원회의 구성시기(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가 일반적이다) 및 위원 수(5명부터 10명 이내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최초 임원의 임명(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임명이 일반적이다)에 관한 사항이 주요쟁점이 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설립위원회의 사전업무를 현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시행일부터 30일 내에 설립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최초의 임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 밖에 설립준비와 관련해서는 설립위원회의 정관 작성과 주무부처의 승인, 설립등기 및 사무인계 이후 해산을 규정하여야 하고, 설립과정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그 비용주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이 농업역사문화전시관 건립 및 설립과정에서 확보·사용한 예산이나 재산 및 권리의무 등의 승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관으로 이관되는 사업을 담당할 사람에 대한 해당 법인의 직원으로의 전환이나 승계, 그리고 해당 법인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법안

제46조의2제1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지체 없는 승인을 통한 해당 법인의 원활한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 국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이전에 소유·운영하였던 재산·권리의무 및 행위 등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해당 법인의 법률관계가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이전에 이미 수립·추진 중인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사업활동을 지체 없이 주무부처가 승인하여야 해당 법인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준비를 위한 행정조직으로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사전에 해당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신설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이들이 승계되어야 해당 법인의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운영과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3-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안

3-3-1. 농업식품기본법의 개정(안)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을 위한 입법안

농업식품기본법
<p>제46조의2(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①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하여 농업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2.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전시·체험·교육 3.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홍보·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 4.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5.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등에 관련된 기술의 조사·연구 및 보급 6. 농업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을 위한 행사개최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 및 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 9.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11.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 ④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고, 관장은 이사장이 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임면한다.
 - 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⑦ 국가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⑧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⑩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그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후원회가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⑪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이나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⑫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파견할 수 있다.
 - 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⑭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⑮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준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설립위원회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최초 임원은 제46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⑦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 속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이외의 직원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된 때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보다 장기일 때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의 정년에 따른다.

제5조(예산편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제46조의2제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3-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관(안)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정관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하여 농업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표기는 "National Agriculture Museum"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000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2.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전시·체험·교육	
3.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홍보·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	
4.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5.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등에 관련된 기술의 조사·연구 및 보급
 6. 농경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을 위한 행사개최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 및 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입장 및 체험전시관 등의 관람과 체험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의 임대 및 위탁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련 기념품·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판매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 개발한 교육 및 체험전시 프로그램의 보급
 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농업역사문화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7.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구성)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원은 관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 경우 비상임 이사 중 1명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관장은 상임으로 이사장을 겸하고, 관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는 임명된 이사로 본다.

③ 제1항의 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사직 등으로 새로이 임원이 된 자는 그 임명일로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관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비상임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감사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⑥ 감사는 제5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임원의 신분보장)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목적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신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
 4.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의 행위를 한 임원을 해임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원이 해임된 때에는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보수) ① 관장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 관장은 참여할 수 없다.
- ② 비상임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관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관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8조제6항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9. 부설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 ② 당연직 이사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관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그 의결사항을 즉시 이사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차기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관장을 포함한 이사는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장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 제16조(이사회의 의사록 등) ① 이사회의 회의결과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여 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그 의사록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장은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그 간사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 제17조(이사회의 세부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부서 및 운영

- 제18조(사업부서) ①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사업부서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부서의 기능, 업무,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직제」로 정한다.
- 제19조(직원의 임면 등) ①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을 임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임용, 승진, 복무, 보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인사규정」 및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보수규정」으로 정한다.
 - ③ 관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그 계약내용·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0조(직원의 파견 등) ①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관의 승인을 받고 파견 근무할 인력의 보직·담당업무·전문분야·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그 소속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 또는 임무를 부여하고,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관장은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관장은 소속 직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인사·보수 등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른다.
- 제2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관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관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려는 때에는 각각 관장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원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2조(부설기관 등의 설치) ① 관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방향 및 업무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농업역사문화 관련 유물이나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한 평가 및 선정,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험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등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부설기관 및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3조(후원회의 설치·운영) ①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모집할 수 있다.
 -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인계한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때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 관람료·체험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출연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기부를 받은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관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기관의 자료제공) 관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이나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사업연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기본재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후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28조(재산의 처분제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기본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2.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29조(운영재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 및 후원금, 자체수익금, 차입금,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 ① 정부 외의 자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대한 출연·기부·후원 등을 하는 때에는 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정부 외의 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협의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정부출연금 등의 예산요구)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대차대비표 및 손익계산서

- 3. 잉여금처분계산서
 - 4.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감사의 의견서
 -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제34조(자금의 차입)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차입목적
 - 2. 차입금액
 - 3. 차입처
 - 4. 차입조건
 -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제35조(잉여금의 처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이월손실금 등의 보전에 충당한다.
- 제36조(재산·회계의 세부규정)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재산 및 회계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37조(정관의 변경)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규정의 제정·개폐)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려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직제
 -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인사규정
 -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보수규정
 -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회계규정
- ③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할 수 있다.
- 제39조(공고의 방법)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등 중요사항의 공고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다.
- 제40조(해산)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해산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해산절차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해산되는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그 잔여재산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 제3조(경과조치)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당시의 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위원회가 추천하여 장관이 임명한다.

-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 속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③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이외의 직원은 관장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본다.
- ④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장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보다 장기일 때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의 정년에 따른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정관을 인가한 때로부터 법 제46조의2제3항제8호의 수익사업에 관한 장관의 승인은 이 정관 제4조제2항의 수익사업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⑦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2018년 00월 00일 각각 서명날인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위원회 위 원 장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4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핵심적 내부규정 제정방안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 제정의
기본방향
2. 유사기관의 내부규정 운영사례 분석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의 제정안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 제정의 기본방향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이후, 그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립·운영되고 있는, 그 성격이 유사한 대표적인 박물관·전시관·체험관의 내부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농촌역사문화전시관의 성격에 비추어 유사한 대표기관의 사례로는 국립박물관이나 체험전시를 중시하는 국립과학관 중 설립 이후의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그 운영경험에 바탕을 둔 내부규정집을 갖추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된 이후에 그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의 제정을 위하여 유사기관의 내부규정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그들 내부규정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으로 적절한 규정들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부규정의 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사기관의 내부규정 운영사례 분석

2-1. 국립중앙박물관

2-1-1.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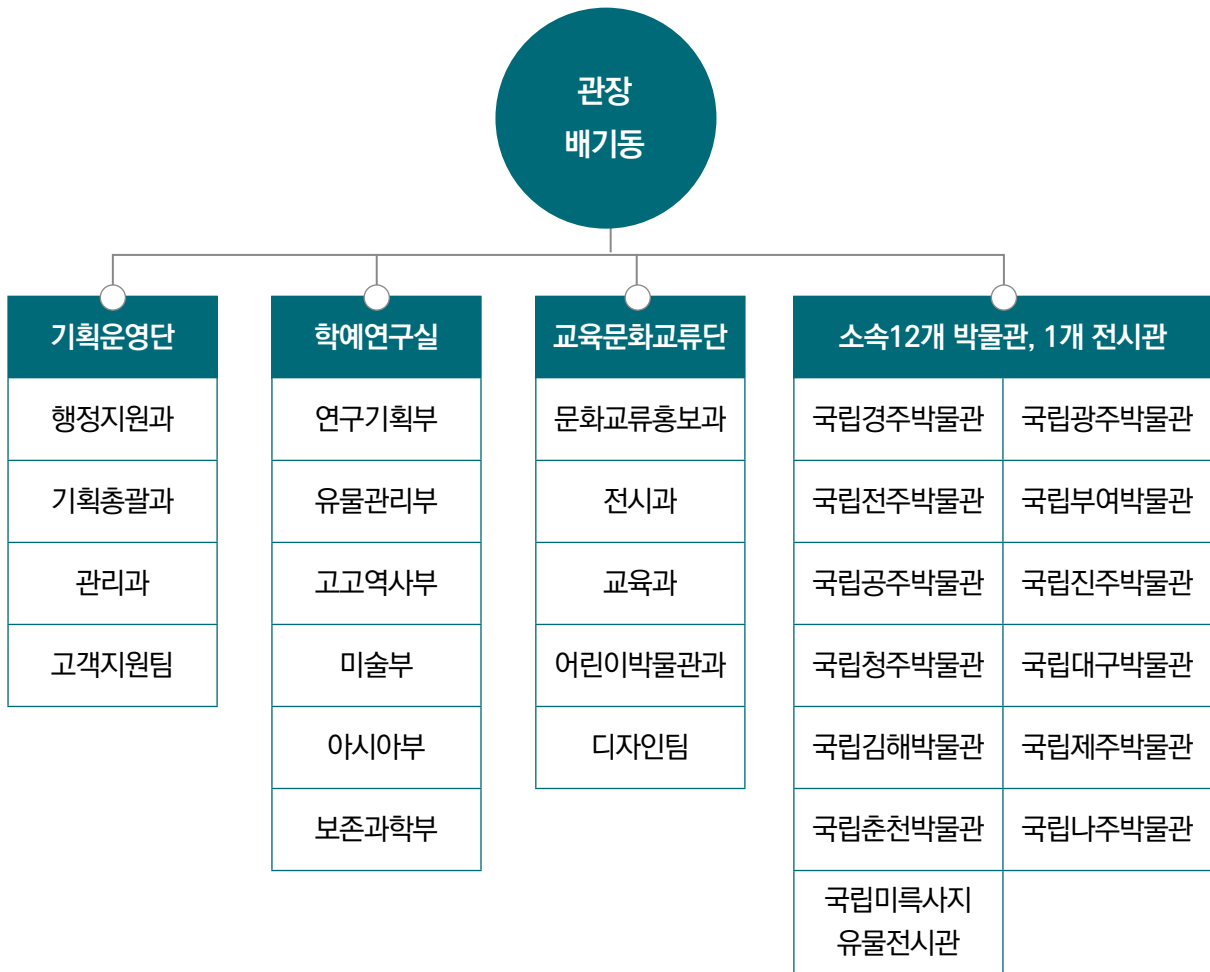
- 국립중앙박물관은 1909년 11월 창경궁에서 제실박물관으로 설립된 이래로 1945년 12월 3일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고, 2005년 10월 용산으로 신축 개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립목적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서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의 관장에 두고 있다(동직제 제29조).

2-1-2.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체계 및 기능

-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체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획운영단·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국립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각 지방에 지방박물관으로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전주박물관·부여박물관·공주박물관·진주박물관·청주박물관·대구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나주박물관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두고 있다(동직제 제31조 및 제35조).

[그림]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체계



2-1-3. 국립중앙박물관의 운영규정

- 국립중앙박물관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므로 그 조직이나 업무범위는 중앙부처의 직제에서 규정되고, 그 하위의 내부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른 예규의 형식으로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구성원은 공무원이므로 직원의 임용, 승진, 복무, 징계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부규정은 중앙부처의 공무원 관계규정 및 재산회계처리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의 내부규정은 조직이나 직제,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원의 임용이나 회계처리규정 등을 제외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관계법령이나 내부운영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관계법령이나 내부운영규정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으로 제정 가능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국립중앙박물관 내부규정의 분석결과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소장유물관리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관계법령)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관계법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
유물전시기획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
	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	○
대외홍보협력	국립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
	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 지원지침	△(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실습생 운영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미술자료 발간규정	○
	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
행정경영관리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규정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윤리강령	○
	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행정경영관리	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 운영규정	
	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공무원임용 및 시험실시권위임규정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소방수칙	○
	국립중앙박물관 방호원 운영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 규칙	○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칙	

2-2.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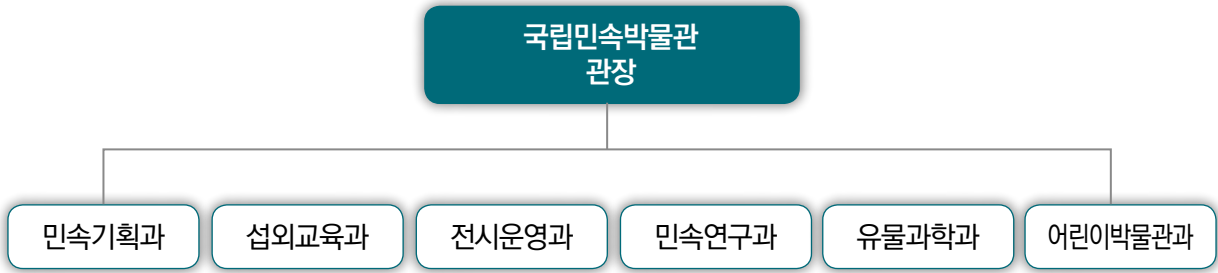
2-2-1.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목적

○ 국립민속박물관은 1945년 11월 국립민족박물관으로 창립되어 1946년 4월 개관된 이래로 1950년 12월에는 국립박물관에 흡수·통합되었고, 1966년 10월 및 1975년 4월에는 경복궁 내에 문화재관리국 소속의 한국민속관 및 한국민속박물관으로 개관하였고, 1979년 4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의 국립민속박물관, 1992년 10월 문화부 소속의 국립민속박물관으로 개편되었고, 1993년 2월부터는 현 건물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목적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서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의 관장에 두고 있다(동직제 제65조).

2-2-2.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체계 및 기능

○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체계는 민속기획과·섭외교육과·전시운영과·민속연구과·유물과학과 및 어린이박물관과를 두고 있다(동직제시행규칙 제40조).

[그림]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체계



2-2-3. 국립민속박물관의 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므로 그 조직이나 업무범위는 중앙부처의 직제에서 규정되고, 그 하위의 내부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른 예규의 형식으로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국립민속박물관의 구성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므로 직원의 임용, 승진, 복무, 징계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부규정은 중앙부처의 공무원 관계규정 및 재산회계처리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 국립민속박물관의 내부규정도 국립중앙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직제,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원의 임용이나 회계처리규정 등을 제외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관계법령이나 내부운영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관계법령이나 내부운영규정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으로 제정 가능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국립민속박물관 내부규정의 분석결과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소장유물관리	국립민속박물관 자료관리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자료구입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수증 및 수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규정	○
유물전시기획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유물전시기획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대관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규정	○	
대외홍보협력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교육운영규칙	○	
	국립민속박물관 인턴십 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		
	국립민속박물관 강사등록제 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화연구』 간행규정	○	
	『어린이와 박물관연구』 간행규정	○	
	행정경영관리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직제)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	
행정경영관리	국립민속박물관 CCTV 설치·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	
	국립민속박물관 소방규칙	○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		

2-3. 국립중앙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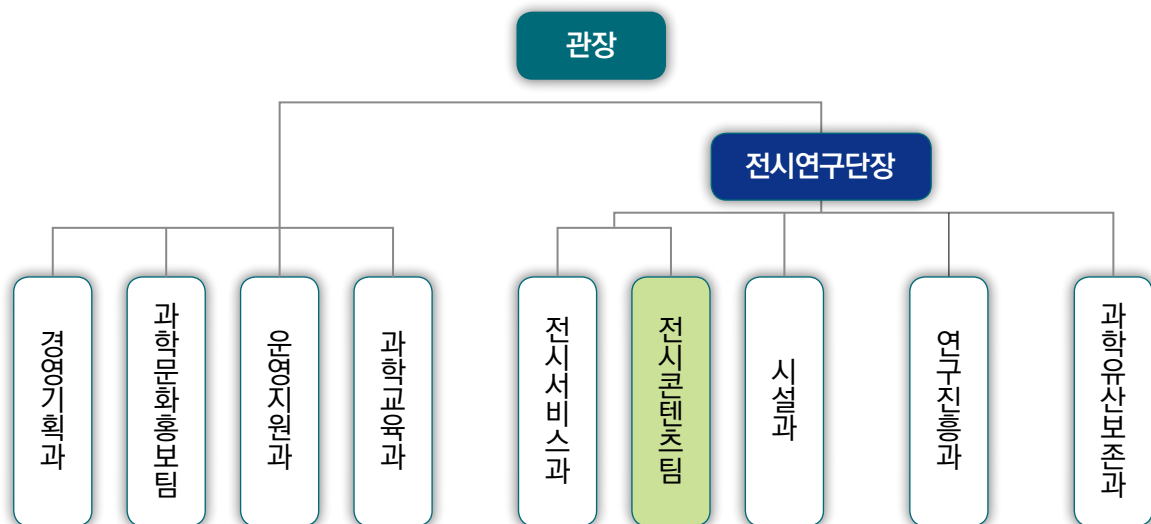
2-3-1. 국립중앙과학관의 설립목적

- 국립중앙과학관은 1927년 5월 은사기념과학으로 설립된 이래로 1945년 10월 국립과학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49년 7월 국립과학관 직제가 제정되어 1962년 8월 국립과학관으로 개관하였으며, 1990년 4월 국립중앙과학관으로 확대 개편되어 1990년 10월 대전의 대덕으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립중앙과학관의 설립목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의 관장에 두고 있다(동 직제32조).

2-3-2. 국립중앙과학관의 조직체계 및 기능

- 국립중앙과학관의 조직체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경영기획과, 운영지원과, 과학교육과, 과학문화홍보팀 및 전시연구단을 두고 있다.

[그림] 국립중앙과학관의 조직체계



2-3-3. 국립중앙과학관의 운영규정

○ 국립중앙과학관은 중앙부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이므로 그 조직이나 업무범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부처의 직제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서 규정되고, 그 하위의 내부규정은 기본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과학관의 구성원은 공무원이므로 직원의 임용, 승진, 복무, 징계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부규정은 중앙부처의 공무원 관계규정 및 재산회계처리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의 내부운영규정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으로 제정 가능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의 분석결과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소장유물관리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수증 및 수탁규정	○
	국가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규정	
유물전시기획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규칙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세칙	○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
대외홍보협력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운영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규정	○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관리규정	
행정경영관리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직제)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관리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2-4. 국립과천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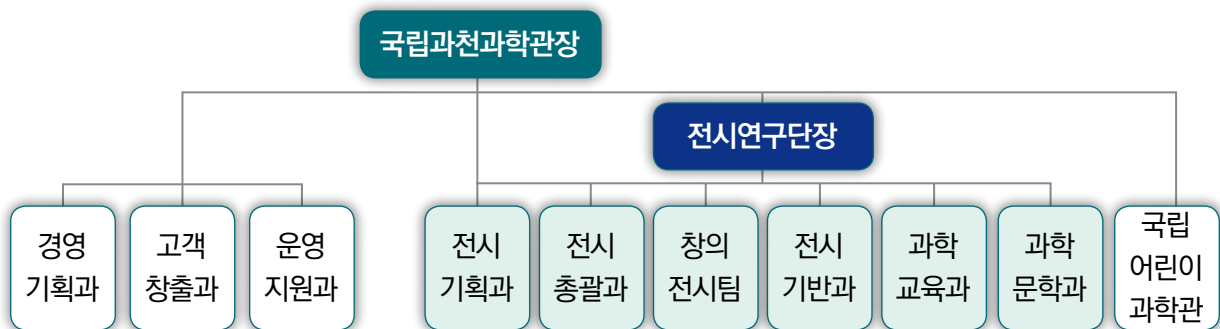
2-4-1. 국립과천과학관의 설립목적

- 국립과천과학관은 2007년 9월 설립된 이래로 2008년 11월 공식 개관하였고, 2009년 9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립과천과학관의 설립목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의 관장에 두고 있다(동직제34조).

2-4-2. 국립과천과학관의 조직체계 및 기능

- 국립과천박물관의 조직체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경영기획과, 고객창출과, 운영지원과 및 전시연구단을 두고 있다(동기본운영규정 제10조).

[그림] 국립과천과학관의 조직체계



2-4-3. 국립과천과학관의 운영규정

- 국립과천과학관은 중앙부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이므로 그 조직이나 업무범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부처의 직제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서 규정되고, 그 하위의 내부규정은 기본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천과학관의 구성원도 공무원이므로 직원의 임용, 승진, 복무, 징계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부규정은 중앙부처의 공무원 관계규정 및 재산회계처리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의 내부운영규정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으로 제정 가능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국립과천과학관 내부규정의 분석결과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소장유물관리		
유물전시기획	전시품 관리규정	○
	전시품 관람규칙	○
	전시장 운영 및 운영요원 근무규칙	○
	전시기획 및 정책자문 운영규정	○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관람료 징수규정	○
	대관규정	○
대외홍보협력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운영규정	○
	홈페이지관리 운영규정	○
	회원제 운영규정	○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
	후원회 및 후원회원 지원규정	○
	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
행정경영관리	사무분장규정	○
	위임전결규정	○
	인사관리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보수조정심의회 운영규정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일상감사지침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
	보안업무 처리규정	○
	방호요원 근무규정	○
	안전관리규정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
	상표 등 관리지침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의 제정안

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 체계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이후의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의 제정을 위하여 유사기관의 내부규정 체계 및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유사기관의 내부규정체계 비교

구 분	내부규정 체계(안)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 과학관	국립과천 과학관	정책판단 여부	
유물관리	유물관리규정	소장품관리규정	자료관리규정	유물관리규정		×	
			자료구입규정				
			자료복제 및 열람규정				
		수증 및 수탁규정	전시품 수증 및 수탁규정				
		소장품국외 대여전시규정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전시기획	전시관리규정			전시품 운영세칙	전시품 관리규정	×	
					전시품 관람규칙		
					전시기획 및 정책자문 운영규정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지침	전시장 운영 및 운영요원 근무규칙			
	관람료 징수규정	무료관람권 발급 규정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규정	관람료 징수규정	관람료 징수규정		×
	대관규정	대관규정	대관규정	시설대관규정	대관규정		×

구 분	내부규정 체계(안)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 과학관	국립과천 과학관	정책판단 여부	
교육홍보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	
	홈페이지운영규정	홈페이지 운영지침	홈페이지 관리규정	홈페이지관리 운영규정	홈페이지관리 운영규정	×	
	회원제운영규정				회원제운영규정	×	
	아카이브운영규정	도서관운영규정	자료실 운영규정	아카이브 운영규정			×
		디지털자료 관리규정	아카이브 운영규정				×
	후원회운영규정	동호인지원지침				후원회 및 후원회원지원규정	×
	교육실습생 운영규정	교육실습생 운영규정	인턴십 운영규정				×
	교육운영규정 교육운영규정		교육운영규칙	과학교육 운영규정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운영규정	×	
강사등록제 운영규정			×				
문화상품관리규정	문화상품관리규정	문화상품 관리규정				×	
학술연구	연구사업관리규정	외부학술연구용역 사업관리지침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	
	연구자료집 발간규정	미술자료발간규정	국제저널무형유산 발간규정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어린이와박물관연구 간행규정							
직제규정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사무분장규정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사무분장규정	○		
		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	
보수규정					○		

구분	내부규정 체계(안)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 과학관	국립과천 과학관	정책판단 여부	
행정관리	회계규정					×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안전관리규정	소방수칙	소방규칙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	×	
	주차장관리규정	주차장 관리규정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	
	보안업무처리규정		정보통신보안 규정			보안업무 처리규정	×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개인정보보호지침				
	당직근무규정	당직근무규칙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
	방호원운영규정	방호원 운영규정	방호근무규칙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CCTV설치·운영규정			CCTV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	
직원윤리규정	직원윤리규정					×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을 제정할 때에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유물관리나 전시기획 및 홍보협력 분야는 특별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지 않으나, 행정관리에 있어서 직제, 인사, 보수규정 등은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다.

-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은 그 직원의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라 통일적 적용을 받으나,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은 그 직원의 인사, 보수규정에 별도의 민간 경영적 마인드가 고려되는 정책적 판단사항이 작용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의 획일적 적용은 곤란하다.

-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과 달리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나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인사, 보수규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채, 조직 내에서 자율적으로 탄력적이며 신축성 있게 제정·운영하고 있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지나치게 경직된 공무원조직의 내부규정 형태 보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급변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민간 경영마인드를 반영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내부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사기관의 내부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설립 초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운영규정의 체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체계안

편 별	규 정 명
제1편 유물관리	1-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
제2편 전시기획	2-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관리규정
제3편 교육홍보	3-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운영규정 3-2.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실습생운영규정 3-3.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운영규정 3-4.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홈페이지운영규정 3-5.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회원제운영규정 3-6.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후원회운영규정 3-7.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4편 학술연구	4-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연구사업관리규정 4-2.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연구자료집발간규정 4-3.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아카이브운영규정
제5편 행정관리	5-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제규정 5-2.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인사규정 5-3.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보수규정 5-4.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회계규정
제5편 행정관리	5-5.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회운영규정 5-6.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관규정 5-7.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람료징수규정 5-8.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안전관리규정 5-9.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주차장관리규정 5-10.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보안업무처리규정 5-1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당직근무규정 5-12.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방호원운영규정 5-13.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규정 5-14.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윤리규정

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핵심적 내부규정안

- 본 연구에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운영규정 제정대상 중 설립위원회 등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규율사항으로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특성 및 운영의 필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 내부규정안으로서 대표적인 유물관리규정, 대관규정,

관람료징수규정, 자원봉사자운영규정, 후원회운영규정, 자문위원회운영규정의 제정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3-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안)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입”이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유물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양도받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이란 유물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수장고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외부의 요청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소장하는 유물을 전시·연구 등의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차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전시·연구 등의 목적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7.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8.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반입”이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또는 외부의 유물(이하 “외부유물등”이라 한다)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10. “반출”이란 외부유물등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1. “유물DB”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표준관리시스템에서 생산, 관리, 활용하는 유물의 디지털정보를 말한다.	
12. “열람”이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이하 유물자료”라 한다)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13. “복제”란 유물자료를 직접 촬영·모사·모조·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유물자료이미지저작물”이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유물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작한 이미지 저작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유물	
2. 등록예정유물	
3. 수탁 등 일시 보관유물	
4. 유물에 준하는 자료	
5. 유물자료이미지저작물	

제2장 유물의 수집

제1절 구입

제4조(구입방법)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공고 또는 추천을 받아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공고를 통하여 유물을 구입(이하 “일반구입”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추천을 받아 유물을 구입(이하 “특별구입”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유물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서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구입서류) ① 관장은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유물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신청유물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매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임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구입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을 구입할 수 없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된 경우

제7조(구입대상유물의 평가 및 선정) ① 관장은 구입대상유물의 자체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구입대상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구입대상유물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특별구입을 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고, 유물매도신청인은 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차 평가위원회와 제2차 평가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제1차 평가위원회는 관련 전공의 학예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며, 구입대상문화재의 가치 및 가격을 평가한다.
2. 제2차 평가위원회는 학예연구본부장, 유물관리팀장 및 전시기획팀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예연구본부장이 되며, 제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평가위원회는 구입대상유물의 가격을 평가 및 결정할 때에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선정위원회는 전·현직 문화재위원이나 시·도문화재위원이 포함된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⑤ 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평가기록은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8조(구입) ① 관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유물의 매도자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유물을 구입한다.

② 관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10일 이내에 해당 유물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유물을 즉시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9조(구입취소) 관장은 구입절차가 완료한 유물이 제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유물의 구입을 취소하고, 유물매도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유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2절 기증 및 수증

제10조(기증신청) ① 관장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수증심의)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는 유물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대상유물의 문화재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연구의 활용도
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유물수증심의위원회는 학예연구본부장, 유물관리팀장 및 전시기획팀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예연구본부장이 된다. 이 경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유물수증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2조(수납서교부) 관장은 유물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13조(수증조건) 수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증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 3 장 유물의 관리

제1절 유물의 관리일반

제15조(관리기관)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6조(관리자와 분임관리자 및 분임보조관리자)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는 유물의 출납 등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분임관리자 및 분임보조관리자를 둔다.

② 관리자는 학예연구본부장, 분임관리자는 유물관리팀장, 분임보조관리자는 학예사로 구성한다.

③ 관리자, 분임관리자 및 분임보조관리자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등록) 관장은 구입·기증 등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수집된 유물을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대장에 작성·비치하고, 그 유물의 정보를 유물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 ① 관리자는 수시로 유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유물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월등록유물증감보고에 매월 말 작성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유물의 손상·분실·도난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유물의 손상·분실·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 손상유물처리위원회는 학예연구본부장, 유물관리팀장 및 전시기획팀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예연구본부장이 된다.

1. 손상 유물의 수리·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분실 유물의 가치평가
3. 관계 직원의 책임

제19조(수리 등)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려는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소독) ①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하고,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포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물이 외부로부터 수장고로 반입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방충·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계인수) 관리자의 교체로 유물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유물의 출납

제22조(출납) ① 유물의 출납은 관리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에서 유물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대출요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 유물을 이동한다.
- ③ 관리자는 유물표준관리시스템에 유물의 출납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자 부재 시 출납) ① 관리자의 부재 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임관리자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수장고의 출입관리

제24조(출입) ① 수장고의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고, 분임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열쇠출납부에 따라 열쇠를 출납한다.

- ② 수장고의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장고관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의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열쇠관리) 수장고의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자와 당직책임자가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관리자가 보관·사용한다.

제4절 유물의 대여

제26조(대여) ① 관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대여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유물의 보관장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③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의 대여를 승인할 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여승인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유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배상 및 수리·복원 조치의 책임을 진다.

⑤ 관장은 제4항의 수리·복원 조치나 배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물을 대여받은 자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유물보험평가위원회) ① 관장은 유물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물보험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유물보험평가위원회는 학예연구본부장, 유물관리팀장 및 전시기획팀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예연구본부장이 된다. 이 경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유물의 보험평가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 차용기관의 요청에 따른 차용유물의 보험평가액의 결정도 이에 준한다.

제5절 유물의 기탁 및 수탁

제28조(기탁신청) ① 관장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기탁받을 수 있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수탁심의)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하는 유물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대상유물의 문화재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연구의 활용도
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유물수탁심의위원회는 학예연구본부장, 유물관리팀장 및 전시기획팀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예연구본부장이 된다. 이 경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유물수탁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심의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물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0조(수탁증서교부) ① 관장은 유물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② 수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탁증서재발급요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비용)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기탁자변경) ① 수탁기간 중에 기탁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장에게 알리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수탁유물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에 따른 서면으로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6절 외부유물등의 반입 및 반출

제35조(반입 및 반출) ① 외부유물등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외부유물등반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부유물등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외부유물등반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시보관증) ① 외부유물을 반입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임시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보관할 유물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절 유물DB의 관리

제37조(사용자권한)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 1]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 내에서 권한 항목을 달리한 세부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별표 1]의 라등급 사용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대상자, 권한의 범위와 기간,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권한관리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임시사용자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물표준관리시스템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 및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시설관리팀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유물DB의 백업 및 복원, 접속정보 관리, 보안에 관련된 제반사항
2. 유물관리팀 : 유물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자료의 입력 및 관리
- ② 시스템의 각 입력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
- ③ 시스템에서 코드를 추가, 삭제 및 변경할 때에는 [별표 1]의 통합관리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유물DB 또는 통계처리된 유물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관리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39조(접속정보관리) 시스템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부여하는 인증으로 접속하고, 개인별 인증은 사용자 본인 이외의 타인과 공유할 수 없으며, 관리 부주의에 의한 도용 피해는 해당 사용자가 책임진다.

제4장 유물의 공개

제1절 유물의 열람

제40조(열람허가) 유물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열람허가대상자) 열람허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서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42조(열람허가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유물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준수사항) 유물자료의 열람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는 열람 유물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3. 유물자료의 촬영 또는 실측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를 제출하고, 관장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4.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변상)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자료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그 변상의 범위는 제18조제4항의 손상유물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절 유물의 복제

제45조(복제허가) ① 유물자료를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유물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장은 유물자료의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유물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유물자료의 복제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과 달리 유물을 제작·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유물자료를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개조하려는 경우에는 관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복제허가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물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사용을 제한할 때
 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47조(준수사항) ① 유물자료를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자료를 복제할 것
 2. 관장이 허가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 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을 것
 3. 관장이 허가한 복제작업 기자재 등을 사용할 것
 4. 복제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에는 복제품에 복제품이라는 사실 등을 분명하게 적거나 적게 할 것
 5. 복제허가의 조건과 유물자료의 보존 등을 위한 관장 및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6.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 관장은 유물자료를 복제하는 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8조(변상) 유물자료를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자료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물자료 또는 시설물을 수리·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변상의 범위는 제18조제4항의 손상유물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9조(복제요금) ① 유물자료를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유물자료의 복제요금은 [별표 2]와 같다.
 - ③ 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3절 유물자료이미지저작물의 관리

- 제50조(저작물관리)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생산한 유물자료이미지저작물(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은 유물관리팀에서 인수하여 보관·관리한다. 이 경우 원본이 아날로그형태일 때에는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한 후에 인수한다.
-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용역 등으로 유물자료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때에는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계약서에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저작권양도계약서에 따라 생산된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1조(저작물제공서비스) ① 저작물의 제공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아날로그형태의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저작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③ 관장은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였거나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이용허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부터 시행한다.

3-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관규정(안)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관규정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관규정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농업역사문화의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전시실 2. 컨퍼런스 다목적실, 교육세미나실, 강당 및 회의실 3. 야외 시설 및 공간 4. 기타 부대시설 및 부지 <p>제3조(대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자체교육, 행사, 유물, 전시체험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역사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농업역사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농업역사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및 지역 행사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역사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p>제4조(대관신청 및 승인)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행사일 3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범위 내에서 대관신청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2. 대관기간(준비 및 철수기간을 포함한다) 및 사용시설 3. 행사 내용(명칭 및 종류, 목적,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반입품의 종류 등) 4. 행사계획서 5. 행사관련 책임운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6. 행사물품, 집기 등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7. 체험·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체험·전시에 한한다) 8. 전기, 수도, 기타 필요한 시설의 용량 등 <p>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관장은 대관을 승인할 때에 시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신청자가 대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관장은 대관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p> <p>제6조(대관료) ① 제4조에 따라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② 대관료는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그 실소요액을 근거로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산출 및 부과방법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거나 제9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대관료의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

제8조(대관의 금지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기타 대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9조(대관승인의 변경 및 취소) ① 관장은 대관승인 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허가를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3. 대관기간 중 도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자 배치
4. 기타 관장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손해배상)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부터 시행한다.

3-2-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람료징수규정(안)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람료징수규정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람료징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 관람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람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통합체험관람		본관전시체험관람		야외전시체험관람		비고
	개인	단체 (20인이상)	개인	단체 (20인이상)	개인	단체 (20인이상)	
어 른							20세 이상
청소년 및 어린이							8 ~ 19세
유 아							4 ~ 7세
영 아							1 ~ 3세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관람을 예약한 자는 관람료를 전자결제하여야 하며, 결제 후 취소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료 등의 게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각종 체험·관람·탑승·전시품작동 등의 관람료를 관람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의 판매) ① 매표원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입금출납직원(이하 “출납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일 개관 30분전까지 각종 관람권을 수령하여 개관시각으로부터 입장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순으로 매표한다. ② 관람료는 출납직원, 매표원 또는 출납직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③ 매표원은 매표를 마감한 후 지체 없이 매표대금과 잔여관람권을 출납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납직원은 매일의 유료관람현황을 별지제1호~제4호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관장은 국민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에 따른 관람자 등 별도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유료 관람공간은 좌석이 매진일 때에는 입장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부터 시행한다.							

3-2-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운영규정(안)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운영규정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운영규정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자원봉사자의 업무)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역사문화상답에 관한 사항 2. 농업역사문화강연회 연사 3. 농업역사문화교육의 지도 및 보조 4. 각종 농업역사문화행사의 운영 및 보조 5. 농업역사문화교재 및 농업역사문화행사 프로그램개발의 지원 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회원제 운영 지원 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체험장 등의 안내 및 질서유지 8.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p>제3조(자원봉사자의 위촉)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업, 농경문화, 농업기술 등 농업역사문화의 보급에 관심이 있는 자 4.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관장은 자원봉사를 신청한 자의 경력과 희망봉사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다.</p> <p>④ 관장은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확인증을 교부한다.</p> <p>자원봉사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관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한 사유 없이 활동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때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 <p>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 ①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업무의 성격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비 및 식비 : 1일 10,000원 이내 2. 업무상 관외활동이 수반될 경우의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2호가목을 적용한다. <p>③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회원증 발급(봉사활동 기간에 한한다) 2. 특별회원증 발급(5년 이상 봉사한 자로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회원제운영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자에 한한다)

- 제5조(근무) ① 자원봉사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제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자원봉사자가 사임하려는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관장에게 통지한 후 자원봉사자확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의 운용) ① 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부서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년부터 시행한다.

3-2-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후원회운영규정(안)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후원회운영규정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소) 후원회의 사무소는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 내에 둔다.
- 제3조(사업) 후원회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후원하고 회원들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농업역사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관리
 2.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이나 금품·학술자료 등의 모집
 3.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후원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4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후원회의 회원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후원하는 사업에 동참할 뜻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②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은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
- ④ 명예회원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또는 전문성으로 인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제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통하여 후원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발간하는 간행물을 무상으로 받으며 관람료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2.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의 제공 및 회비의 납부

- 제7조(후원금 등) ①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의 모집 및 회비를 징수한다.
 ② 후원금은 가입시에 납부하는 일반후원금, 자발적으로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납부하는 특별후원금 등으로 구성한다.
 ③ 회비는 모든 회원이 가입 다음 연도부터 매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연회비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연회비는 임원 등의 여부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언제나 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 회원의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의 모집 및 회비의 금액이나 징수방법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특별후원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연회비 납부 의무나 그 밖에 회원으로서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의무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회원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고, 3년분 이상의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은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 이외에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였거나 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③ 개인회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그 배우자는 후원회에 승계신청을 함으로써 사망한 회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 단서에 따라 자격을 승계한 회원은 후원금이나 회비 등의 납부 의무를 포함하여 사망한 회원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후원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취지 또는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후원금 등의 인계 및 사용내역 통보) ① 후원회는 제7조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모집한 때에는 이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 제11조(임원) 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감사 2명 이내
 4. 사무국장 1명
 5. 운영위원 20명 내외(사무국장을 포함한다)
- 제12조(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① 후원회는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다만, 초대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 제15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제16조(부회장의 구성 및 직무)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방향과 후원회 운영 전반을 기획하고 회원관리 및 재정운동을 총괄한다.
- 제1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후원회의 재산 및 회계와 운영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후원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회원이 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며,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의결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4.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및 의사록 작성)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회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는 당해 회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총회의 의사진행과 결과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기명 날인한 후 후원회에 비치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 ① 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시안 작성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4. 회원의 가입 승인
 5.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후원회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24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 까지 회의의 목적·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 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정족수 및 의사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는 당해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과 결과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기명 날인한 후 후원회에 비치한다.

제 6장 집행기구

제26조(사무국) ① 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집행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 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③ 사무국에는 회장과 사무국장의 업무를 도와 줄 실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서를 둘 수 있다.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안의 작성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사업의 집행
4. 재원의 관리 및 집행
5. 회비의 징수 및 관리
6. 회원 관리
7.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8. 기타 후원회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 7장 재정

제27조(재원) 후원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후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후원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후원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후원회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관장과 협의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한다.

제30조(재원의 운용과 관리) ① 후원회의 재원은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② 후원회의 재원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관리 및 집행한다.

제31조(회계연도) 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편성) 후원회의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결산) 후원회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8장 보칙

제35조(보고) 후원회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예산편성, 결산 및 회계감사의 각 결과를 즉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후원회의 해산) ① 후원회를 해산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후원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기증한다.
 제37조(규칙의 개정)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부터 시행한다.

3-2-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회운영규정(안)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박물관·체험관·과학관 운영, 농업·역사·문화·교육·법제·경영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에게 자문한다.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전시·체험 등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후원 및 수익창출 방향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관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관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간사 등) ①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부터 시행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5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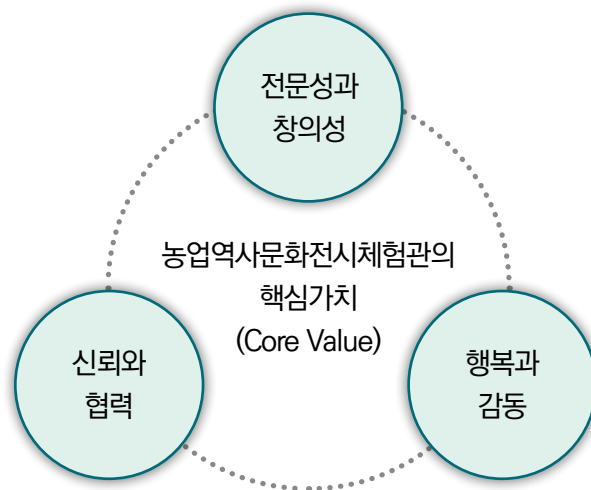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장기 방향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운영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장기 방향

1-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비전

농업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농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농업역사문화의 즐거운 체험을 통해 행복을 주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미래세대에 감동과 영감을 주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지향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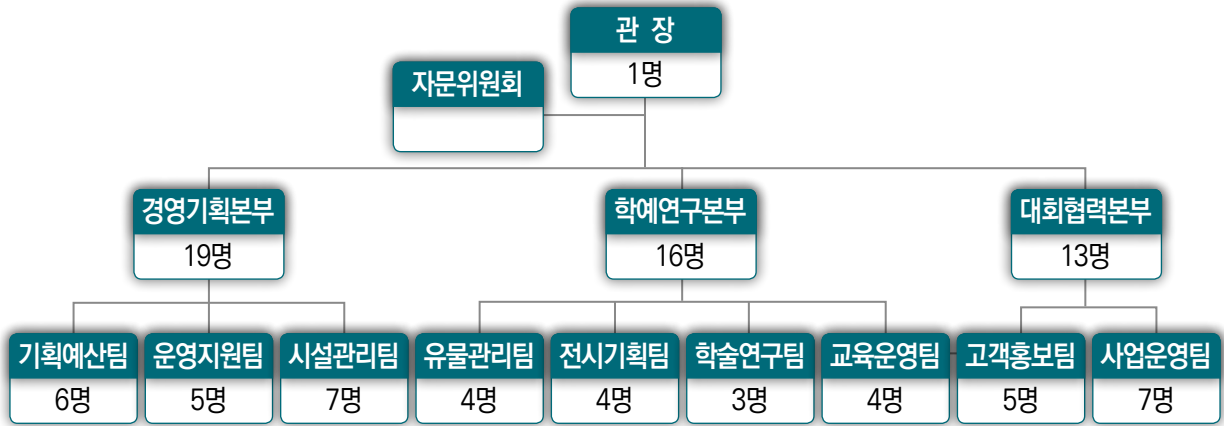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운영

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무 및 조직구성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무는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의 추진으로 설정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그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도



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 사무분장

○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대표이며,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 경영기획본부는 본부장 아래 기획예산팀(6명), 운영지원팀(5명), 시설관리팀(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정원은 총 19명으로 하며, 각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경영기획본부의 사무분장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감사·국회·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내부규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연보 작성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	--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 및 관인 관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업무에 관한 사항 6. 방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7. 관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관람료·주차료의 징수 및 대관 등 각종 수익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보수 3.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학예연구본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전산위탁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설용역업체의 감독에 관한 사항 11. 수목·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학예연구본부는 본부장 아래 유물관리팀(4명), 전시기획팀(4명), 학술연구팀(3명), 교육운영팀(4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정원은 총 16명으로 하며, 각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학예연구본부의 사무분장

학예연구본부	유물관리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물·자료의 수집·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유물·자료의 구입·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물·자료의 대여·수증·수탁 및 반출·반입에 관한 사항 4. 유물·자료의 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유물·자료의 제작 및 복원·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유물·자료의 DB구축과 연계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유물·자료의 목록연구 및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8. 수장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유물자료이미지저작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시기획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시 기획·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6.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시실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전시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전시 기법·체계연구에 관한 사항 9. 전시실 및 전시자료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학예연구본부	학술연구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예연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경문화 등에 관련한 유물·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유물·자료의 연구기획 및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 4. 농경문화 등 관련 연구개발성과물 수집 및 전시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물·자료의 전시·연구·교육관련 국내·외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6. 학술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7. 학술연구 및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8. 농경문화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및 아카이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콘텐츠 등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사항 4. 농경문화 등 관련 사회교육 기획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박물관 전시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경문화 등 관련 교육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학교 밖 농경문화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본부는 본부장 아래 고객홍보팀(5명), 사업운영팀(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정원은 총 13명으로 하며, 각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외협력본부의 사무분장

대외협력본부	고객홍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안내 센터 운영 및 상설전시관 등의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3. 관람객 민원처리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전관리 및 관람객 배상·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및 연도별 고객창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원 및 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홍보용 간행물·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1. 전시체험물 제작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의 기획·운영·유치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매체활용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장기 및 연도별 수익창출(마케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객 대상층 및 규모별 차별화된 수익 확대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신사업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기념품, 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 7. 체험프로그램 등의 보급 및 광고수입 창출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문화프로그램 및 공연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관리(8명), 청소(9명), 경비(5명), 주치(2명), 안내·매표(11명), 현장스텝이나 강사 등 전시운영지원(25명) 분야는 정원 외의 위탁사업으로 운영한다.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운영 및 증장기 발전전략

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관리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에 관한 증장기 유물수집정책을 수립하고, 유물(유·무형)을 체계적으로 수집·확충하며, 유물의 항구적 보관과 관리체계, 보존과학 역량 등을 강화하여 선진국형 소장품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들 유물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소장품의 역사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규명하여 대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1-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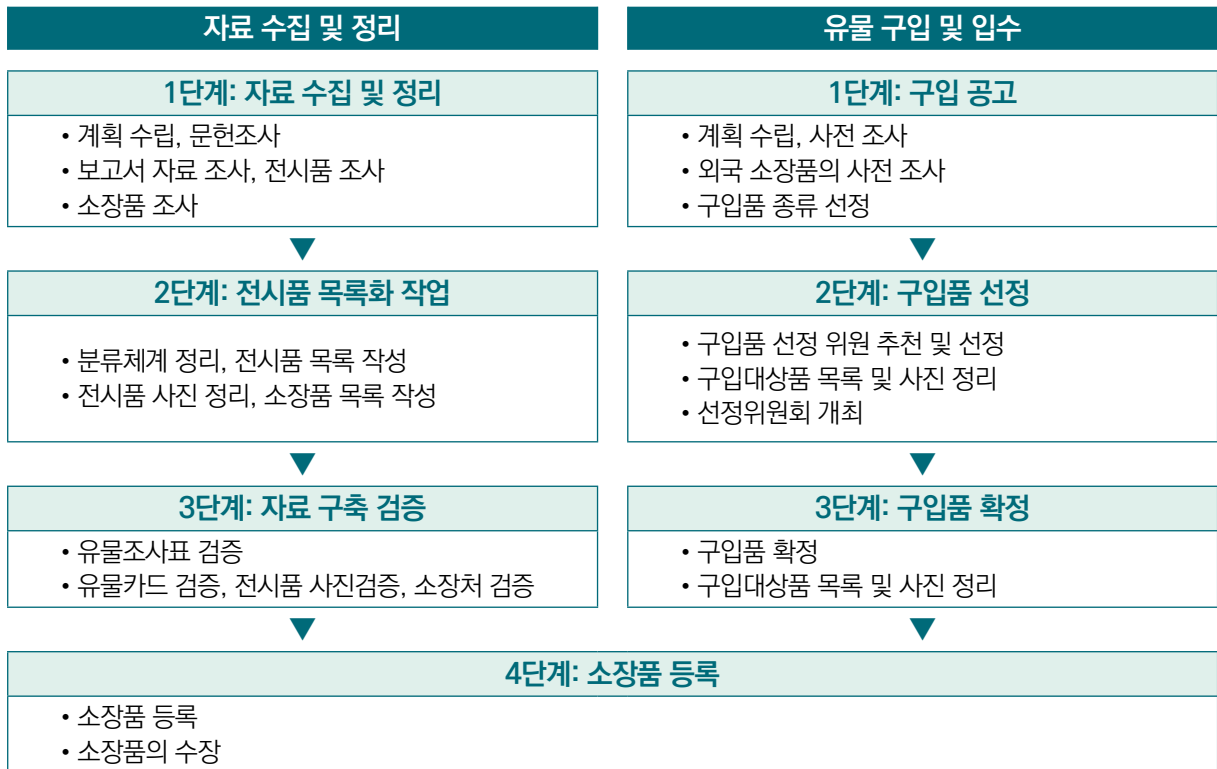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라 유물의 수집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현장 박물관으로서의 유물,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물을 그 선정의 기본방향으로 한다. 또한 유물의 수집은 전시대상품을 우선적으로 하되, 소장유물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전시대상품의 선정 및 확보에 있어서는 그 선정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어울리는 전시품 확보, 복제품 보다는 농업유물의 실물전시 지향, 농업박물관의 모범사례로서의 기능 기능, 공인된 자료에 기초한 전시대상 목록화, 구입대상유물의 구입 편의성을 위한 유물의 종류에 따른 목록화 등으로 한다.

- 전시대상품 및 소장품 확보방안으로는 구입, 대여, 기증, 국가귀속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중요 소장품이나 대여가 어려운 중요 소장품을 우선 구입대상으로 하고, 국가기관 소장품을 대상으로 대여를 추진하며, 공립기관 소장품 중에서 관리 미숙의 소장품을 기증형식으로 이관 받음과 동시에 개인의 기증을 적극 유도하고,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의 지정을 추진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른 유물 수집의 추진단계는 다음과 같다.²⁴⁾

24) EGA GROUP(2016.12),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40면.

[그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유물수집 추진단계도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의 수집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품의 중장기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소장품 수집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소장품 수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수집하는 유물에는 실물 뿐만 아니라 자료와 아카이브, 전시와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 수집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수집되어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이나 자료의 수집방법은 구매, 조사, 기증, 기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유물의 수집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첫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의 중장기 수집정책을 수립한 후 그 정책에 바탕을 두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확충한다.
- 둘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의 구입을 합리화하고 민간기증을 활성화하여 전시 활용도가 높은 중요유물의 수집을 강화한다.
- 셋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의 수집에 있어서 실물만이 아니라 유물과 관련된 다양한

시청각자료, 문헌자료 등을 총체적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아카이브센터를 구축한다. 이 경우 이들 자료의 영구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이들 자료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 넷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수집대상은 과거지향적인 것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재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관련 유물·자료 등도 함께 고려한다. 이 경우 현재의 농경방식과 관련된 도구, 이에 관련된 행사나 관습 등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조사와 함께 도시농경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장된 수집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섯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소장품의 수집과 취득, 등록 및 정보기록, 대여 및 차용,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소장품의 처분 등 소장품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어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3-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장고 및 보존처리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증장기 유물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유물의 수장 공간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유물의 출납관리,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유물DB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1-2-1. 수장고의 출납 및 관리

가. 개관준비기의 수장고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개관준비기 동안의 수장고는 임시 수장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임시보관 중인 유물일지라도 보관방법별로 분류하고, 전시 가능한 소장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개관 이후 수장까지 고려한다. 이 경우에는 전시품을 우선적으로 유물 등록 및 보존처리하여야 한다.

- 전시를 위한 자료들이 모두 수장고에 반입되면, 해포작업과 기록, 사진촬영 후 각 보관장소에 나누어 수장한다.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들은 보존처리실이 갖추어진 기관에 의뢰하여 보존처리를 의뢰하고, 보존처리된 자료가 반입되면 수장고의 전체 훈증을 실시한다. 훈증시 가급적 자료의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제를 선정하고, 수장고에서의 업무를 고려하여 근무자에게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장고의 담당자는 자료의 반입 전에 자료에 해가 되지 않는 포장재와 보존제, 조습제, 온습도장부,

자료상자를 구매하여 수장고에 비치하도록 한다.

나. 개관 후의 수장고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개관 이후 수장고는 전시자료 이외의 영구보존자료부터 우선적으로 등록·보존처리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등록은 자체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소장하는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개관 이후의 반입 자료는 1차적으로 보존처리 후 반입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수장고를 훈증한다. 이 경우 수장고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수집품의 보존에 영향을 주는 빛, 온도와 상대습도, 유해가스, 생물학적 매개물 등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잘 이해하여야 하고, 그러한 손상 또는 훼손의 징후가 발견될 때에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1-2-2. 유물의 보존처리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이나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그 보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유물과 그 밖의 유물을 구분하고 등급화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학습용이나 교육용의 자료는 담당자의 재량범위를 명확히 하여 학습이나 교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초기에는 필요한 보존처리시설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보존처리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보존처리만 가능한 유물이나 자료의 수집을 우선하고,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1-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표준관리시스템 및 정보화

3-1-3-1. 유물의 표준관리시스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은 자체 개발·구축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활용하는 방법은 개발비용, 시간 및 완성도의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박물관·과학관·체험관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기관으로서 설립 초기 박물관 등록 이전에 유물등록 및 관리가 필요한 유물의 수집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유물 중 일부는 일반 박물관의 유물과 성격을 달리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그 설립단계에서부터 자체 독립적인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보호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에 잠정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1-3-2. 유물정보의 정보화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규정에 유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유물정보의 디지털화 등을 포함한 유물DB를 관리하는 유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한다.

3-1-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조사 및 연구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우리나라 유일의 농경문화 및 식품분야의 전문박물관으로서 농경문화 분야의 연구지원을 통한 연구 활성화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학술연구역량 강화한다.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경문화 관련 유물이나 자료가 고고, 역사, 민속, 미술, 공예, 영양, 자연과학 및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있어 다학제적 조사연구를 통한 전시 및 연구콘텐츠를 확보하고, 관련 학문의 연구토대 형성을 지원한다.

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전시기획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와 관련하여 중장기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전시프로그램의 기획·개발과 상호작용 대화형 전시체험을 통해 관람객의 관람·체험·참여·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용자중심으로 나아가고,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우리의 농업역사문화를 널리 알리며 우리의 농업역사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농업 및 식품의 중요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3-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의 구성

3-2-1-1. 전시의 기본방향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라 전시기획의 지향목표는 농업의 소중함과 문화 이해, 농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욕구 충족,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 제시로 설정한다.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전시기획의 지향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람객과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시·체험을 함께 만들어가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진화형 체험전시관’을 지향하고, 콘텐츠·연출·공간·운영 등 다각적인 전시방법을 적용하여 ‘진화형 체험전시관’을 구현한다.

3-2-1-2. 전시의 공간구성 및 연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전시공간은 건축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기본계획의 공간배치계획에 변동을 주고 있으나, 제작공방실을 제외한 다른 공간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전시공간으로 역사관, 농업관, 첨단농업관, 3D영상관, 전시체험관, 직업체험관, 농식품홍보관, 식문화관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라 전시공간을 전시스토리라인에 따른 영역별로 전시구성 및 연출한다.
 - 역사관은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농경문화 발달사의 특징과 농경 유적 및 유물 중심으로 전시하고, 관람객의 의견을 반영한 오픈형 전시를 추구한다.

- 농업관은 근·현대 농업과 농업기술의 발전상 및 세계 농업의 현황 중심으로 전시하고, 농업과 관련된 세계적 이슈 및 변화상의 실시간 체험을 추구한다.
- 첨단농업관은 IT·BT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첨단농업의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연구기관 및 지역대학과 연계한 실험교실의 운영을 추구한다.
- 3D영상관은 초기 농경의 시작부터 미래 농업에 이르기 까지 농업의 전반적인 역사와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 연출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농업의 가치 제고를 추구한다.
- 전시체험관은 농사 과정과 농경문화 및 식품 체험을 통하여 농업분야를 이해할 수 공간으로 전시하고, 체험 결과에 따라 수확물이 달라지는 참여형·상호작용형 체험을 추구한다.
- 직업체험관은 농사 및 농식품 직업체험을 통하여 농업분야의 직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시하고, 관련 기업 및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변화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추구한다.
- 농식품홍보관은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농식품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며 농업 확산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하고, 관련 기관의 정보업데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추구한다.
- 식문화관은 한국 및 세계의 식문화와 미래 음식의 체험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주제에 따라 교체전시가 가능한 모듈형 전시디자인을 추구한다.
- 기획전시나 특별전시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을 통한 순회전시 등 다양한 방법을 추구한다.

3-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의 운영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의 운영은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 및 콘텐츠를 중심으로 농업의 특성에 따른 작물의 성장시기·계절·테마 등을 고려하고, 체험전시의 특성에 따른 직접체험 및 안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전시공간의 구성·연출과 함께 중장기 전시계획 및 전시기획시스템의 구축, 그에 따른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전시기획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전시기획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시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첫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중장기 전시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바탕을 두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만의 특화된 상설전시를 기획한다.
 - 둘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특별전, 테마전, 국제교류전 등 수준 높고 다양한 기획전시를

계획하여 관람객들의 요구 및 시대적 흐름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 셋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다양한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시체험프로그램 및 다학제적 주제를 발굴한다.
- 넷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전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시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상시 관람객의 반응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다섯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와 전시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3-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교육운영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실 및 야외를 이용하여 다양한 농업·식품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절별·주제별 다양한 테마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수행하며 꾸준히 재방문하는 전시체험관이 되도록 하고, 학교 교육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각양각색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수준 높고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3-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의 구성

3-3-1-1. 교육의 기본방향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은 기본계획에 따라 전시 및 체험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농업의 미래가치를 공감하는 참여형, 체험형, 진화형프로그램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3-3-1-2.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령별로 흥미 및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를 세분화하여 개발한다. 이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어린이 및 청소년은 도심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장년층은 도시농업·귀농귀촌 등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미취학 5~7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체험을 통해 농업역사문화를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체험관·온실 및 야외체험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때에는 안전 및 간식 공간을 배려하여야 하고, 사전에 교육청·관계기관 및 협회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 초등학생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사회, 슬기로운 생활, 과학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며 학기 중 교육 이외에도 방학 중 실시하는 학생 및 가족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하고, 중학생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개발하며, 고등학생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미래의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농업 관련 특기자 전문교육 및 교과과정 연계 교육을 개발한다.
- 대학생 및 성인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교양이나 취미(가정 내, 텃밭, 주말농장, 도시양봉 등)로서의 농업에 대한 교육, 귀농·귀촌 예정 및 희망자를 위한 교육, 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 등 수요에 맞추어 개발한다.
- 그 밖에 교사연수프로그램 및 관람객의 전시관람과 체험활동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와 도우미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주제별 및 계절별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개발한다.

- 주제별 교육프로그램은 농업의 역사·문화, 식품, 공예, 원예, 자연·생태, 첨단농업 등 다양한 농업관련 주제별로 세분하여 개발한다.
- 계절별 교육프로그램은 온실과 야외체험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마다 성장과정이 다른 곤충, 식물, 작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이 경우 전시 및 체험물의 성장과정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세시풍속, 이야기 등의 무형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의 운영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개관준비기에 담당인력의 구성, 교육 및 전시자료의 확보, 유사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참관 및 시사점 정리,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강사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의 수급 및 연수, 개별 교육프로그램의 실행계획 및 자료 준비, 학습안의 보완 및 확정,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관람객 모집,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 제1단계 담당인력 구성 : 교육의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추진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총괄로 지정하고, 교육의 기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담당자를 확대한다.
- 제2단계 교육 및 전시자료 확보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고유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보 및 분류하고, 이를 교육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교육담당인력은 개별

소장유물의 정보와 자료, 전시체험실과 전시체험 자료, 외부 전문가들의 발표자료 등을 수집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정보지식체계 맥락에서 분류한다.

- 제3단계 유사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관 및 시사점 정리 : 교육담당인력은 유사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가지며, 유사기관 교육담당자들과의 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제4단계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교육담당인력은 수집된 정보와 자료들을 분석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연령·주제·계절별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과정에 외부전문가와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에 활용한다.
- 제5단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의 수급 및 연수 : 교육담당인력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관리하는 인력과 교육프로그램운영 현장강사를 선정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체험 및 전시체험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 제6단계 개별 교육프로그램의 실행계획 및 자료 준비 : 연수된 강사 인력들과 함께 개별 교육프로그램의 주제·형식·체계·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교육프로그램 체계는 프로그램 개요 및 구성, 학습자료와 교재, 학습되는 전시체험물과 언어·평가방법 등으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안과 지도안, 활동지와 교재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 제7단계 학습안의 보완 및 확정 : 교육담당인력은 내부 전시담당자들과 외부 교육전문가들에게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안의 방법과 교육효과 등에 대한 감수를 거쳐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안을 확정한다.
- 제8단계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관람객 모집 : 교육담당인력은 교육프로그램 확정 후 외부에 교육프로그램을 널리 알려 다양한 형태의 관람객을 모집한다.
- 제9단계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교육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모니터링 담당내부인력의 교육, 평가결과의 환류 등이 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첫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그 정책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한다. 이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성격에 맞는 참여형 체험활동의 비중 확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용 교재 개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둘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교육전문인력(Educators)을 확충하여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의 기획력을 강화한다.
- 셋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전시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학예연구본부 부서간의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한다.
- 넷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지역 및 교육시설, 문화관련 시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다섯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세계의 다양한 농업문화와 농업 관련 세계적인 이슈를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해외 유사 체험관이나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의 교류를 강화한다.

3-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수익창출

3-4-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익사업의 구성

3-4-1-1. 수익사업의 기본방향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익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입장료 및 체험료, 기부금 및 멤버십, 편의·부대시설 운영, 부분 위탁운영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3-4-1-2. 수익사업의 예상수익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람객 수요에 대하여 KDI 예비타당성조사는 연간 최소 62만명에서 최대 170만명을 산정하였고, EGA 기본계획은 연간 최소 58만명에서 최대 120만명을 산정하였다.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람객 수요

구분	KDI 예비타당성조사	EGA 기본계획
최소	620,871명/년	585,098명/년
최대	1,696,909명/년	1,224,476명/년
평균	1,158,890명/년	904,787명/년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입장료 및 체험료, 체험·교육프로그램요금, 임대료(대관료, 위탁임대공간료, 주차장수입) 등의 수입을 연간 최소 48억 5,400만원에서 최대 95억 8,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 입장료 및 체험료의 수준을 7,000원으로 적용하여 연간 최소 40억원, 최대 85억원의 수입을 추정하였다.
 - 체험·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11,000원으로 산정하고 참여비율을 3.6%로 적용하여 연간 최소 23억원, 최대 49억원의 수입을 추정하였다.
 - 임대료의 경우 대관시설(다목적 전시홀, 교육공간, 로비)은 단가 953원/㎡×52일/년을, 위탁임대시설(식당 등)은 단가 266,362원/㎡·년을, 주차장은 단가 3,000원/대를 적용하여 연간 5억 2,400만원의 수입을 추정하였다.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현금수입 추정

관람객 수요	입장료/체험료	체험·교육 프로그램요금	임대료	합계
최소	4,096,000,000	234,000,000	524,000,000	4,854,000,000
최대	8,571,000,000	489,000,000	524,000,000	9,585,000,000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축실시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시설물의 공간배치 및 면적이 변동되었고, 개관까지의 물가 상승률 및 기타 수익사업의 추가 등을 고려할 때에 기본계획의 예상수익 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4-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익사업의 운영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관람객의 지속적 확대와 수익창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익창출의 중장기 발전전략

구 분	중장기 발전전략
<p>입장료 및 체험료</p>	<p>입장료 및 체험료는 관람객의 방문목적 및 범위에 따라 시설별 체험범위, 패키지 이용, 연령별 요금 등을 다양하게 세분하여 운영한다.</p> <p>입장권 및 체험료는 전시관·체험관의 주제와 시설별 특성에 따라 1일권, 시설별 이용권, 테마권, 프리패스 등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시설이용·교육·식음료이용 등 다양한 상품과 결합한 입장권 및 체험권을 동시에 개발하여 운영한다.</p> <p>입장료 및 체험료는 지역문화행사 기간 등에 할인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공존 및 지역고객의 지속적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농업관련 시설과의 연계된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한다.</p> <p>입장료 및 체험료는 기본이용요금에 추가체험을 필요로 하는 관람객의 연속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추가요금제를 운영한다.</p> <p>입장료 및 체험료는 현장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예매 이외에도 소셜커머스·모바일·기프트콘 등 다양한 구입방법의 제공 뿐만 아니라 온라인 회원가입에 따른 할인,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구매자의 할인·우선입장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개발하여 운영한다.</p>
<p>기부금 및 멤버십</p>	<p>후원회제도의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후원회가 법률에 의한 후원금의 모집과 인계의 공정한 운영, 후원회 회원의 지속적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들 회원에게는 발간 간행물의 무료 배포나 입장료·체험료의 면제, 명예 부여 등 우대정책을 실시한다.</p> <p>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기부항목을 별도로 구성하여 다양한 기부대상 및 금액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이벤트나 행사 등을 통하여 기부금 모금활동을 강화한다.</p> <p>후원 및 기부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 취약·소외계층 교육지원, 지역문화 개발사업, 농업관련 특성화사업 등 다양한 신규 지원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한다.</p> <p>일반회원의 확보를 위하여 개인회원, 가족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등의 일반회원제를 운영하고, 입장 할인혜택, 간행물 무료배포, 교육 제공, 기념품 구매할인, 행사안내 및 소식지 배포, 학습지 배포 등 회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p> <p>기부나 후원 등의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한 멤버십제도를 통해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모바일 기프트 콘과 같이 멤버십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 멤버십 전용라운지 개설 및 멤버십 회원문화행사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 방문을 유도한다.</p>
<p>편의 및 부대시설</p>	<p>뮤지엄 스푼은 자체 개발하거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개발한 도시농업을 위한 체험상품, 치유농업을 위한 화분 키우기 세트상품 등과 같은 다양한 농업문화상품이나 출판물 등을 관람객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p> <p>식당·카페 등의 식음료 시설은 임대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전시·체험용 식음료상품 등의 개발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p> <p>컨퍼런스룸, 교육강의실은 농업역사문화 관련 강좌나 회원들의 생일 파티 등에 시설대관 서비스로 제공하고, 라운지나 외부공간은 농업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이벤트나 행사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p> <p>교육강의실이나 세미나실은 어린이교육프로그램,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등에 제공하여 공간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수익을 창출한다.</p> <p>식음료 시설이나 유희공간(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비어 있는 사각공간 등)은 관람객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자판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한다.</p>

구 분	중장기 발전전략
<p>위탁사업</p>	<p>시설관리, 청소, 경비, 주차, 안내·매표, 전시체험관 전시운영관리, 컨퍼런스룸 등의 위탁사업은 안정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용역발주하고, 사전에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p> <p>전시체험관 전시운영관리는 용역을 발주할 때에 위탁용역사의 업무범위, 근무지별 소요인력 및 자격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서비스수준협약의 체결 및 평가를 통해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일정 이상의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유도한다.</p> <p>전시체험관 전시운영관리는 전시체험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2년 단위의 장기계약으로 하고,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술협상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p> <p>전시체험관 전시운영관리나 컨퍼런스룸의 용역발주는 용역위탁사가 기업의 협찬광고 스폰서십을 유지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수익을 증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협찬광고 스폰서십을 유지한 위탁용역사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적극성 제고와 부가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p>
<p>홍보 및 마케팅</p>	<p>기관의 정체성, 철학, 가치를 담은 CI(Corporate Identity) 등의 개발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p> <p>기관의 문화상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여 관람객의 관심을 증대시킨다. 이 경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사전에 고유의 독창적인 문화상품을 자체 개발하거나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소장유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며, 우리 농업역사와 문화·유물을 소재로 하는 교육용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 등도 개발하여야 한다.</p> <p>기관의 시설을 각종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의 장소로 대여 또는 제공하고, 농업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기관의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추진하여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한다.</p> <p>자체 셔틀버스의 운행 및 지역시티투어버스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축제의 연계를 통해 지역민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며, 스탬프 투어나 앱을 이용한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의 참여를 확대하고, 블로그나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한다.</p> <p>유관기관이나 지역문화기관과의 연구·전시·교육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채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상호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자연스러운 홍보 및 마케팅의 효과를 강화한다.</p> <p>홈페이지 및 사이버체험전시관을 구축하여 소장유물, 전시·체험관 및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관람객들의 흥미와 방문 유도를 강화한다.</p>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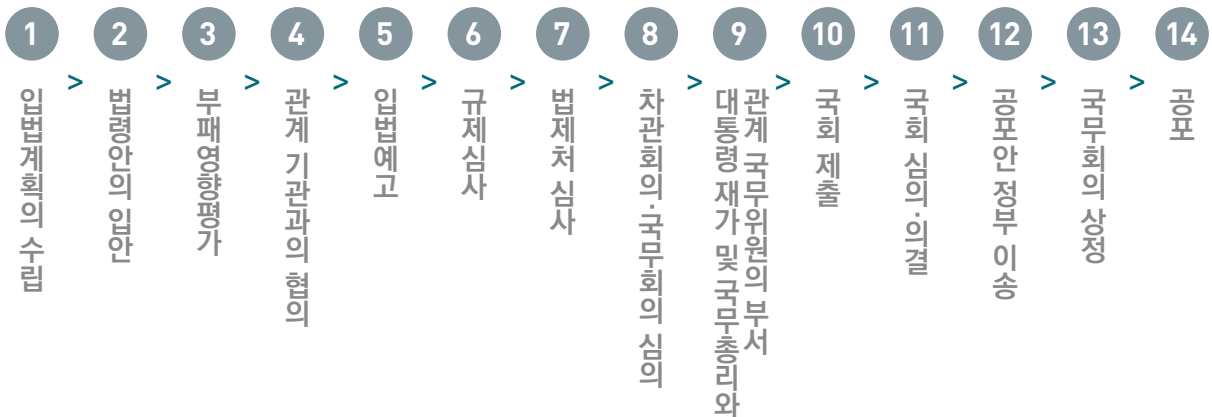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6장

결론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2021년 상반기(5월) 개관을 위해서는 그 설립근거의 법제화, 법률에 근거한 조직체계의 구성, 건축공사의 착공 및 완료, 개관 이후 직원·유물·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다양한 경영기법과 홍보마케팅방안을 연구·개발하는 등 꾸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의 연착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첫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법제화 및 법률에 근거한 조직체계의 구성을 조속히 추진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 법제화를 위한 입법과정은 행정부 내에서만 5개월~7개월이 소요되고 국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은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림] 정부의 입법절차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안 및 정관안을 확정하고, 법령안의 입안 및 제출,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신설 사전심사,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재가 및 국회제출을 추진하고,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법령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법제화가 마련되면, 2020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설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주요 운영내용 및 세부규정 마련, 설립등기, 업무인계 등을 거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설립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 공포 후 2개월 이내(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립위원을 추천·확정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설립위원회가 정관 확정 및 임원 선임을 거쳐 장관의 정관 인가 및 임원 임명을 받고 재산출연 범위 등 주요 운영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결정하며 확보된 예산규모에 맞추어 기관운영에 필요한 직제·인사·보수 등의 세부 조직운영규정을 연구 및 확정된 후 설립등기를 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장(이사장)에게 업무인계를 한 후 해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되면, 2021년 5월까지 개관준비에 필요한 창립이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인계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2021년 5월까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자체 운영 및 개관준비에 필요한 창립이사회 개최 및 내부규정 확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공공기관 지정대상 통보 및 지정, 직원채용 및 배치, 개관식 준비 등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에게 업무를 인계한다. 이 경우 법률 및 정관의 부칙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과 동시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하여 그 업무를 인계받도록 한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법률 및 정관의 부칙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시키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되도록 조치한다.

○ 둘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건축공사의 착공 및 완료, 상설전시 및 체험관의 구성, 직원·유물·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경영기법·홍보마케팅방안 등을 연구 및 개발한다.

- 건축공사 및 상설전시·체험관의 구성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수정(2018.1.24.)한 일정에 따라 2018년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2020년까지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 개관 전까지 사전 운전을 통하여 수정·보완한다.

- 직원의 인사, 보수나 조직의 직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법의 법제화가 마련되면, 설립위원회에서 확보 가능한 예산규모와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상반기부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전까지 외부용역 등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직급, 임금, 보수체계

등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내부 규정화하여 운영한다.

- 유물수집은 2018년부터 유물수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물의 선정·구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2018년 유물수집대상을 조사·선정하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물의 구입·입수, 유물의 등록·정리 등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증 활성화와 기증자우대제도 연구, 생물자원과 생태자료 조사 및 관리제도 연구 등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유물 조사 및 수집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 유물수장은 유물의 수집이 이루어지는 2019년부터 임시수장고를 확보·운영하며 2020년 건축완료 후 2021년 초 수장고 시운전을 거쳐 개관 전까지 유물들을 이전 및 격납한다.
- 유물 정보화는 2019년부터 유물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2021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 전까지 수정 및 보완한다.
- 전시기획은 2018년에 전시주제 해설기초자료 연구, 2019년에 기획전시전 및 찾아가는 전시전 연구와 방문객 친화형 콘텐츠 연구, 2020년에 체험기반 감성형 콘텐츠 연구 등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관람객의 지속적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 교육운영은 2018년에 참여형 체험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교재개발, 2019년에 학교교육과정연계프로그램 연구 및 교재개발, 2020년에 지역문화 및 유관기관연계교육프로그램 연구 등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관람객의 확대 및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 수익창출은 2018년에 입장료·체험료 징수제도 연구, 2019년에 후원 및 자원봉사자 활성화제도 연구, 2020년에 소장유물콘텐츠 활용을 통한 다양한 문화사업 운영방안 연구 등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 홍보마케팅은 2019년에 사이버전시체험관 개발과 홈페이지 운영 및 기업홍보방안 연구, 2020년에 기업브랜드 개발과 고객만족도 등 관람객평가제도 연구 등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행사·이벤트행사를 기획·운영하여 관람객의 지속적 관심과 방문을 유도한다.

○ 셋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2021년 상반기 개관을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조직을 강화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되어 개관하기까지는 설립법안의 마련, 설립을 위한 입법추진, 설립위원회의 운영, 초기 임원의 구성, 건축공사의 착공 및 관리,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전시의 설계 및 기획,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수익사업 및 홍보마케팅의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행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정원 2명(팀장 및 사무관)에 건축공사에 필요한 기술직 공무원, 서무·기획담당 공무원, 전시·교육담당 학예사 등을 배치 및 파견을 받아 총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에 필요한 전문적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과학관·체험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는 건축, 전시설계, 유물수집, 교육, 연구, 수익사업, 홍보마케팅 등의 전문인력 배치가 요구되고, 설립법안의 입법추진 및 설립위원회의 운영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더라도 적정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 따라서 2018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예산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준비인력의 예산을 배정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이후에 고용할 전문인력을 사전에 채용·운영한다.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팀장 아래 추진실무단을 설치하고, 지금의 인력 이외에 학예연구본부장급 1명, 유물수집·관리 2명, 전시·체험관리 1명, 교육프로그램개발 1명, 홍보마케팅·수익사업개발 2명 등 총 7명을 보강할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추진실무단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설치근거법 및 정관에 따라 그 설립과 동시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되고, 2021년 5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활동 종료와 함께 그 업무를 인계받는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제를 개정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활동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그 활동기간의 종료와 함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지원·감독하는 새로운 사무를 농촌정책국의 업무에 분장한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계획 수립																																																													
설립 법인	예비법령안 연구 및 마련																																																												
	예비정관안 연구 및 마련																																																												
법령 수립	예비운영규정안 연구 및 마련																																																												
	법령안의 검토 및 확정																																																												
법인 설립	장관회의 검토 및 확정																																																												
	운영규정의 검토·확정 및 추가 운영규정 연구																																																												
법인 설립	입법계획 수립																																																												
	입법계획 제출(법제처)																																																												
입법 추진	법령안의 입안 및 제출																																																												
	부패영향평가																																																												
입법 추진	관계기관 협의																																																												
	공공기관 신설 사전심사(기획재정부)																																																												
입법 추진	입법예고																																																												
	규제감사 및 법제처 심사																																																												
입법 추진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제거 및 국회 제출																																																												
	국회 심의·의결 및 공포인 장부 이송																																																												
입법 추진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설립위원 추천 및 확정 설립위원회 설치 정관 확정 임원(회장, 이사, 감사) 선임 정관 인가 및 임원 임명(장관) 설립위원회 재단법인법위 등 주요 운영내용의 심의 및 결정 세부운영규정 검토 및 마련(직제, 인사, 보수 등) 설립증기 업무인계 및 해산 국유재산 무상양도 협의(기획재정부) 창립(사회) 개최(내부규정 승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요청 직원채용 및 배치 공공기관 지정대상 통보 및 지정 사업계획서 승인(장관) 기관내 준비 및 개최 동양역사문화전시체험관 초차별 업무인계 및 정부 사업조직 신설 (신체개장)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유물 수집	기초자료 조사연구																																																												
	유물수집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물수집대상 조사 및 선정																																																												
유물 관리	유물구입 및 입수																																																												
	유물등록 및 정리																																																												
	민간기증 활성화 방안 및 유대제도 연구 및 개발																																																												
유물 수집	생물자원 생태자료 조사, 관리제도 연구 및 개발																																																												
	임사수장고 확보 및 운영(보통전시관)																																																												
	수장고 시운전																																																												
유물 정보화	유물 이관 및 격납																																																												
	유물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유물통합관리시스템 수정 및 운영																																																												
사업 운영	기획전시관 및 추가기능 전시관 연구 및 개발																																																												
	해향기반 간성현 관편초연구 및 개발																																																												
	전시추진 핵심기초자료 연구 및 개발																																																												
방문객 친화형 콘텐츠 연구 및 개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육 운영	첨단형 체험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교재 개발																																																											
	학교교육과정연계프로그램 연구 및 교재 개발																																																											
	지역문화·유관기관연계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수익 창출	임장료·제원료의 징수제도 연구 및 개발																																																											
	후원 및 자민용사자 활성화제도 연구 및 개발																																																											
사업 운영	소장유물관리·활용을 통한 다양한 문화사업 운영방안 연구 및 개발																																																											
	기업브랜드(CI 등) 개발																																																											
홍보 마케팅	사이버진시체험관 연구 및 개발																																																											
	홈페이지 운영 및 기념 홍보방안 연구 및 개발																																																											
	고객만족도 등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개발																																																											
	전시체험관 홍보 및 이벤트 행사의 지속적 실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참고문헌

- 강방훈(2011.4),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통지식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2011년 4월 인문콘텐츠학회 클로키움 : 농촌 콘텐츠와 농촌지역 활성화, 인문콘텐츠학회.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2014.12), 영화박물관 건립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2015.5), 국립항공박물관 세부전시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안),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 국토해양부(2008.12),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 국토해양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1.25.),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 김명규(2017.8.25.),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와 정책방향”, 인터넷자료 - <http://blog.naver.com/kpfisnet/221081961333>.
- 김창규 외(2012.12), 문화유산기록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촉진방안연구, 문화재청.
- 김형준(2011.4), “농촌체험 마을의 현실과 발전방향”, 2011년 4월 인문콘텐츠학회 클로키움 : 농촌 콘텐츠와 농촌지역 활성화, 인문콘텐츠학회.
- 김혜인 외(2013.12),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서곡숙(2011.4),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통 가옥의 효율적 활용 방안”, 2011년 4월 인문콘텐츠학회 클로키움 : 농촌 콘텐츠와 농촌지역 활성화, 인문콘텐츠학회.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6.12),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조사 용역, 국토교통부.
-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2017.1),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홍보마케팅 방안, 국립한글박물관.
- 양건열 외(2011.6), 국립박물관 교육의 방향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건열 외(2013.12),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1), 방문객 친화형 생활사박물관 건립타당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윤유석(2011.4), “농촌발전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의미와 방향”, 2011년 4월 인문콘텐츠학회 클로키움 : 농촌 콘텐츠와 농촌지역 활성화, 인문콘텐츠학회.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08.12), 국립생태원 기본계획 수립 2단계 연구 최종보고서, 환경부.
- 인문콘텐츠학회(2011.4), 2011년 4월 인문콘텐츠학회 클로키움 : 농촌 콘텐츠와 농촌지역 활성화, 인문콘텐츠학회.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7.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장 공간 재배치를 위한 전시체계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5.4),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국립제주박물관.
-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2016.4),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실행계획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교통연구원(2013.12), 국립 항공박물관 건립 기획 연구, 국토교통부.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2016.5), 새만금박물관 건립방안 구상 연구, 새만금개발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12), 국립한글박물관 콘텐츠 활용을 통한 박물관 문화사업 운영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1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2010.10),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0.5),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 해양수산부.
-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부설 문화재연구소(2014.10), 국립지적박물관 설치 타당성 연구, 국토교통부.
- 호서대학교(2016.12), 국립한글박물관 체험 기반 감성형 콘텐츠 구축 전략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2010.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2015.6), 국립의산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2016.5), 새만금박물관 건립방안 구상 연구, 새만금개발청.
-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2017.10),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증충화 기본계획 및 수장공간 확충을 위한 증장기방안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 (주)역사문화사(2011.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주제 해설 기초자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 (주)퍼포먼스 웨이컨설팅(2010.12), 국립생태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 환경부.
- (주)프라임전략연구원(2017.4), 국립중앙박물관 조직진단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 국립중앙박물관.
-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KAIST 문화기술대학원(2013.10),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기획재정부.
- Stephen E. Well, 「Report to the Deaccessioning Task Force of the Registrars Committee of AAM」, 『A Deaccession Reader』, 1997,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 발 행 일 : 2018년 2월 20일
- 발 행 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 연구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 구 진
 - 연구책임 : 최 종 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박물관학박사)
 - 공동연구 : 김 창 규(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원장, 법학박사)
박 윤 옥(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박물관학박사)
황 규 진(前 알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부관장, 박물관경영석사)
이 진 형(경희대학교해정박물관 학예사, 박사과정)
 - 연구지원 : 박 자 행(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문화경영정책석사)

* 본서의 내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